

2020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편람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제1장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소개

1. 설립 목적	1
2. 설립 경과	1
3. 이사회 및 위원회(보상심사·상담자문)	2
4. 공제회 가입대상	2
5. 공제료	2

제2장 학교안전사고의 이해

제1절 학교안전사고

1. 학교안전사고란?	4
2.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책임	5
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6
4.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7
5.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절차	8

제2절 사고통지 작성

1. 사고통지 작성 절차	10
---------------------	----

제3절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종류 및 내용

1. 요양급여	13
2. 장해급여	30
3. 간병급여	32
4. 유족급여	34
5. 장의비	37
6. 위로금	38
7. 상담지원	40

제4절 공제급여 지급 제한

1. 일반적인 제한 사유	42
2. 기왕증	42
3. 과실상계 적용	42
4. 다른 법령과 중복되어 제한되는 경우	43
5. 공제급여제한 관련 법령 자료	43

목 차

Contents

제3장 학교폭력사고의 이해

제1절 학교폭력사고

1. 학교폭력사고란?	45
2.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45
3.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자 처벌	47

제2절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1. 학교폭력 피해 지원 범위	48
2.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절차	48

제3절 학교폭력 피해 청구 절차

1. 학교폭력 사고통지 작성 절차	49
2.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절차	50

제4장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의 활용

제1절 학교사용자 매뉴얼	52
---------------------	----

제2절 학부모사용자 매뉴얼	85
----------------------	----

제5장 보상심사 및 재심사 청구

1. 보상심사 및 재심사 청구란?	97
2. 보상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 안내	97

제6장 학교안전사고 보상실무 Q&A

1. 학교안전사고 Q&A	102
---------------------	-----

1. 설립 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경상남도 교육 발전에 기여

2. 설립 경과

- 설립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설립 인가 : 2007. 8. 22.
- 사업 개시 : 2007. 9. 1.

※ 종전의 상호부조 형태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를 해산하고, 법률에 근거한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운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정 배경

- 종전의 학교안전공제회(사단법인)는 보상기준이 시·도마다 각각 다르고, 법률적인 재정지원의 뒷받침 없이 상호부조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에 있어 학교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
- 이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범위를 공적인 사회보험 수준으로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07. 9. 1.)
- 이로써 학생·교직원 등이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학교안전망 구축

3. 이사회 및 위원회(보상심사·상담자문)

○ 이사회

- 구성 : 이사장 및 이사 13명, 감사 2명(임기 3년)
- 기능 : 공제회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보상심사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11명(임기 2년)
- 기능 : 공제급여 결정 불복에 따른 심사청구 건 심리.결정

○ 상담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

-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5명(임기 2년)
- 기능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에 대한 심리.결정

4. 공제회 가입대상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5. 공제료

- 정의 : 교육활동 중 사고를 당한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공제급여 등에 충당할 공제회 기금조성을 위해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금액
- 납부방법
 - 납부인원 : 매년 4월 1일 기준 경남교육통계에 의한 재적학생수
 - 납부금액 : 재적학생수 × 학교급별 기준액

○ 납부계좌 : 경남은행 638-07-0022874(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 납부기간 : 매년 4. 1. ~ 4. 30. 까지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의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법률시행 이전	법률시행 이후(2007.9.1 이후)
법인성격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 제정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명 칭	· 사단법인 경남학교안전공제회	·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가입학교	· 초·중·고, 평생교육시설 · 사립유치원(임의가입)	· 초·중·고, 평생교육시설 · 사립유치원(의무가입) · 외국인학교(임의가입)
가입대상	· 학생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학부모 등)
공 제 료	· 유치원, 초등학교 : 연 1,000원 · 중·고등(기타)학교 : 연 1,300원	·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
보상범위	· 교내·외 교육활동 중 사고 · 학교 체류시간 중 사고 · 교육계획에 의한 특별활동 중 사고 ·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안	· 교내·외 교육활동 중 사고 · 학교 체류시간 중 사고 · 교육계획에 의한 특별활동 중 사고 ·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안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 · 직업체험, 직장견학, 현장실습 중 사고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중 사고 · 자해·자살 사고 등
보상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소송비용, 합의금 지원	·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위로금, 상담 및 심리적 치료 · 소송비용 등 지원
사고통지	·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의무)

제2장

학교안전사고의 이해

제1절

학교안전사고

1. 학교안전사고란?

-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1. 장소적 요건 : 교육과정 또는 교육계획에 따라 학교안팎에서 학교장 관리·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등의 활동
+
2. 내용적 요건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대회) 참가 활동
+
3. 시간적 요건 : 등·하교, 학교체류시간, 직업체험, 직장견학, 현장실습, 기숙사생활, 학교 외 집합·해산 또는 장소와 거주지의 왕복시간 중의 활동

-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이 해당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이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책임(사고와 질병이 경합되는 경우)

가. 사고의 요건

- 학교안전사고는 ① 사고의 급격성, ② 사고의 우연성, ③ 사고의 외래성, ④ 사고의 원인의 독립성, ⑤ 신체상해의 발생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나. 신체상해의 발생

○ 상해의 개념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 다시 말하여 상해를 의학적 측면에서 보는가, 법률적 측면에서 보는가, 그리고 공제적 측면에서 보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

다. 상해와 질병과의 상호관계

상해공제에서는 신체의 상해가 담보되고 질병은 무담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해가 질병을 일으키고, 또 질병 때문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상해의 결과를 중하게 하는 등이 양자는 상호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은 바, 상해사고가 질병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의 사건처리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질병이 우연한 사고로 상해의 자연적 결과가 된 경우

- 개에게 물려 공수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부상 개소로부터 파상풍, 패혈증 등의 창상전염병에 걸린 경우 등은 선행한 상해사고와 후에 발생한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해 질병도 상해사고의 결과로서 담보

○ 질병의 발생이 우연의 사고와 관계가 없는 경우

- 사고를 당해 치료 중 당뇨병에 걸려 사망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상해 사고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고 먼저 발생해 있었던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요양급여나 후유장애급여는 지급가능 하고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게 됨

3.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안전사고의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교육활동 중에는 가급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학급 전체를 상대로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질서를 위한 대리인(반장 등) 지정
-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 체육(준비운동 포함), 과학실험 실습시간, 교외현장학습 시 사전교육 실시
 - 학생들의 지병을 확인하여 격렬한 체육활동에서 열외시키는 등 특별관리
- 현장학습.수학여행.체육선수 육성훈련.특기적성교육 등의 교육계획 수립.시행시는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
 - 차량이용 시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계약
 - 수련원.야영장 계약 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계약
 - 놀이시설 계약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계약
 - 숙박시설 이용 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계약
-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
 - 베란다에서 장난 또는 이동 금지 및 안전장치 완비, 고층교실 유리창 청소금지, 위험한 학교시설 설비의 수리.보완 등
- 학생에 대해 사적인 지시 및 심부름 금지(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이 수반 될 수 있음)
- 학교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실시(사고발생시 학교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시설물 관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유치원생의 경우 교원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 필요
 - 신체적.인지적인 면에서 매우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절대적인 보호 필요

4.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학교안전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되 책임 있는 자(보건교사,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자 등)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다.
- 응급조치 및 피해자의 후송 등은 신속히 119에 연락하여 처리한다.
- 사고자가 의식이 없거나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경우와 같이 부상 상태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사고발생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무리하게 이동시키지 말고 현장에서 전화로 119에 보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 학교안전사고는 사전의 예방교육과 사고발생 시 초기 응급조치가 중요하므로 평소 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제회에 통보한다.
- 사고 발생 후 책임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부터 종결 시 까지 경과를 기록한다.(사고현장 사진,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
- 사고발생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사고의 빠른 해결만을 목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게 되면 사후 소송제기 등 책임소재에 다툼이 생길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공제회로 통보한다.
-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사고 처리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해결이 곤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 사고처리는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대처토록 한다.(사고담당자 지정)
- 사고 처리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한다.
- 사고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학생의 친권자인 학부모와 직접 협의하고 필요시 공제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한다.(학부모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사고처리의 본질이 왜곡 될 수 있음)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통보 한다.
- 교직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사립 학교 교원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설치·경영자)인 국가(시·도 또는 학교법인)가 우선 배상하고 교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교직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 법인)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이를 분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5.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절차





⑧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

- ▶ 공제회는 접수일로 **14일이내** 지급(14일 연장 가능)
 - ▶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내역 공문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가능)
 - ▶ 학교에서 공제급여 지급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발송
-
- ▶ 공제급여에 이의 있을시 공제급여 결정일로 90일 이내 보상심사 청구 가능

1. 사고통지 작성 절차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 ① 상단메뉴 **[학교안전사고통지]** 버튼 클릭 (**그림 1 참조**)
- ② **사고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고발생신고서 작성하기
- ③ 완료된 사고발생신고서를 **인쇄하여 학교장 결재** 받기 (**그림 2 참조**)
- ④ 결재 후 사고발생신고서를 **수정버튼을 통해 업로드** 진행 (**그림 1 참조**)
- ⑤ 업로드가 끝나면 **통보버튼** 클릭하여 **문서상태가 미접수**가 되도록 변경
※ 통보버튼은 1회만 누르면 되고, 추후 수정시에는 누르지 않아도 됨.

※ 유의사항 : 사고통지는 사고발생시 지체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2주 이상 늦어진 경우 기타사항에 사유 기재

그림 1



그림 2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일반사항	학교명	공제초등학교1				
	사고번호	Temp2- 2016- 0126731			보고일자	2016- 12- 09
	사고자	성명	성명출입	성명	학년반	사고자구분
		테스트1	111111	남	1학년/1반	일반학생
지도교사		작성일자	성명		영학처	

사고관련자	성명	학년반	사고관련자 구분
		반	

사고개요	사고일자	2016- 12- 01	사고부위	
	사고시간		사고당시활동	
	사고장소		사고의도성	
	사고형태			
	사고매개물			

사고경위	.
------	---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
-----------------	---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
-----------------	---

기타 사항	.
-------	---

담당자	교감	교장
(인)	(인)	(인)

제3절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종류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36조
장해급여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u>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u>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법률 제37조
간병급여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u>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u>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	법률 제38조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u>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u>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	법률 제39조
장의비	피공제자가 <u>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u>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법률 제40조
위로금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40조의2
상담지원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가족에 대하여 <u>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u>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 제10조의3

1. 요양급여

학교안전법 제36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요양급여 지급범위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은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본인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전액지급하고 있으며,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등은 요양급여 지급기준 중 해당 항목에 한하여 지급 하고 있음.

나. 비급여 항목 진료비 인정기준

비급여 란?

국민건강보험제도 상의 요양급여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비급여항목은 치료의 필수적 여부, 건강보험기금운용의 정책적 측면 등이 고려되어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으로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제회는 비급여 항목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법령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만을 지급한다.

【예시】요양급여 지급범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9.1.>

[]외래 []입원 ([]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 료 이외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찰료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⑨ 이미 납부한 금액	
		약품비							
	주사료	행위료						⑩ 납부할 금액 (⑧-⑨)	
		약품비							
	마취료						⑪ 납부 한 금액	카드	
	처치 및 수술료							현금영수증	
								현금	
	검사로							합계	실질적으로 계산한금액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시행령별표2제4호의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전액 지급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지급					

다. 요양급여 청구 절차

※ 구비 서류

- 1) 공제급여청구서 원본
 - 2) 진료비영수증 원본
 - 3) 청구자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진단서
 - 6)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제출시 업무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가능함.

1) 공제급여청구서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방법 (학교용)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① 상단에 **[공제급여청구]**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림 1 참조)**
- ② 중단에 **[청구서 작성]**버튼을 클릭 후 사고 학생 이름으로 사고통지가 접수된 건을 찾아 **학생이름을 클릭**하세요. **(그림 1,2 참조)**
- ③ 새로 열린 창에서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에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림 3 참조)**
- ④ 청구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목록에 작성되어 있는 사고학생을 선택 후 **[인쇄]**버튼을 통해 인쇄하여야 합니다. **(그림 1 참조)**

(※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구-호환성보기 설정에서 해당 주소를 추가하면 됩니다.)

- ⑤ 공제급여청구서는 총 2장이 출력되며, 첫 번째 장 상단과 중단에 각각 **청구인 서명 및 학교직인**란이 표기되어있습니다.

(※ 50만원 이하시 : 학교직인만 날인

50만원 초과시 : 청구자 및 학교직인 날인 모두 필요)

【그림1】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예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제초등학교1님 반갑습니다. 로그인

학교안전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폭력피해청구 | 법령 | 안내 | 학교정보수정 | 통계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공제급여청구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공제급여청구 확인 | 전체 | 보전 | 대상아님

목록에 보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아래에 있는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하는 방법은 **날짜를 클릭**하시면 달력이 나타나며 달력에서 사용자들이 원하시는 기간을 걸하시면 됩니다. (4)

(2) **청구서작성** | 수정 | 삭제 | **인쇄** | 처리내역 | 사유

기간 2015-01-24 ~ 2018-01-23

사고자 이름 | 검색 | 상세검색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청구자	청구구분	청구금액	결정금액	처리상태
☐ Temp2-2017-0091630	사고	박태준 / 2학년 2반	2017-09-07:	박태준/배우자	중간/일시보조	1,111	0	학부모청구

(4)

【그림2】 청구서 작성 버튼 예시

기간 2017-01-23 ~ 2018-01-23

사고자 이름 | 검색 | 상세검색

사고발생번호	구분	(2)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동지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문서상태
2018-0000000	사고	홍길동 / 학년학년 반	2018-01-01	/			접수

【그림3】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예시

공제급여청구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공제급여청구

사고발생코드 2017-0121367 | 주해

작성자 이름: | 직위: | 연락처: |

· 피공제자

이름 서류도학데스트 | 생년월일 999999

구분 일반학생

학교 공제초등학교1

· 파일업로드 **추가** | 선택삭제 | 10MB 미만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파일로 첨부된 영수증 사본은 참고용으로 접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공제회로 영수증 원본을 우편 송부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의료비영수증 원본(병원영수증,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영수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입니다

(3) **확인** | 취소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방법 (학부모용)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모바일인증 로그인 합니다.

- ① 상단에 [공제급여청구]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림 1 참조)
- ② 중단에 [청구서 작성]버튼을 클릭 후 사고 학생 이름을 검색하여 사고통지가 접수된 건을 찾아 **학생이름을 클릭**하세요. (그림 1,2 참조)
- ③ 새로 열린 창에서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에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림 3 참조)
- ④ 청구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목록에 작성되어 있는 사고학생을 선택 후 [인쇄]버튼을 통해 인쇄하여야 합니다. (그림 1 참조)

(※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구-호환성보기 설정에서 해당 주소를 추가하면 됩니다.)

- ⑤ 공제급여청구서는 총 2장이 출력되며, 첫 번째 장 상단에 **청구인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그림1】공제급여관리시스템 예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제초등학교1님 반갑습니다. 로그인

학교안전사고통지 (1) 공제급여청구 학교폭력사고통지 학교폭력피해청구 법령 안내 학교정보수정 통계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공제급여청구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공제급여청구 확인 **현재** 보전 대상아님

목록에 보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아래에 있는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하는 방법은 **날짜를 클릭**하시면 달력이 나타나며 달력에서 사용자분이 원하시는 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4)

(2) **청구서작성** 수정 삭제 **인쇄** 처리내역 사유

기간 2015-01-24 - 2018-01-23 사고자 이름 검색 상세검색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청구자	청구구분	청구금액	결정금액	처리상태
Temp2-2017-0091630	사고	박태준 / 2학년 2반	2017-09-07:	박태준/배우자	중간/일시보호	1,111	0	학부모청구

(4)

【그림2】사고학생 검색 버튼 예시

공제급여청구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 신규 ☒ 검색

검색을 클릭하여 자녀의 사고발생통지 확인 후 사고발생통지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신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07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웹...

자녀이름	홍길동
지역	▼
학교명	
생년월일	



사고학생 검색

기간 2017-01-23 ~ 2018-01-23

사고자 이름

사고발생번호	구분	(2)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통지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문서상태
2018-0000000	사고	홍길동 / 학년학년 반	2018-01-01	/			접수

【그림3】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예시

공제급여청구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공제급여청구

사고발생코드	2017-0121367 조회		
작성자	이름 : 직위 : 연락처 :		
· 피공제자			
이름	서유도학대스트	생년월일	999999
구분	일반학생		
학교	공제초등학교1		

· 파일업로드 10MB 미만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파일로 첨부된 영수증 사본은 참고용으로 접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공제회로 영수증 원본을 우편 송부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의료비영수증 원본(병원영수증,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영수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입니다

(3)

【예시】공제급여청구서 앞면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 청구서(중간, 최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급여(위로금, 보전비용)를 청구합니다.

2018년 1월 1일

공제회 이사장 귀하

사고발생번호	2018-00000000		
청구인	성명	[성명 또는 반] [생년월일]	
	주소	청구인 날인하는 곳	
	전화번호		
	피공제자와의 관계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인이 제 3자일 경우 작성	
	전화번호		

공제가입자	학교명	공제초등학교		
	학교장	김교장선생님	[직인]	학교직인 날인하는 곳
	주소	(* 학부모 청구일 경우 생략 가능)		
피공제자	성명	홍길동	성별	M
	주소			
	소속		학년	반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적음)	발생일시	2018-01-01 목요일 16시 00분		
	발생장소	일반교실		
	사고관련자 소속		성명	
	사고경위 및 내용	155		
청구액	요양급여	O	장의비	
	장해급여		보전비용	
	간병급여		위로금	
	유족급여		기타	
	합계		청구구분	최종
	계좌정보			
구비서류	첨언 참조			

공제급여청구서 뒷면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공제가입자(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공제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청구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4. 청구서 기재란의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위의 서류 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비고
요양급여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주민등록등본	
장해급여	1. 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	
간병급여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2. 주민등록등본	
유족급여 및 장의비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월소득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보전비용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위로금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서는 A325 용이 부착됩니다.

청구인 날인 하는 곳

처리절차



【예시2】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조제일자 (진료기간)	구분 (입원, 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 공제 대상액		
		총액 (①+②+③+④)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 총액 (②+③+④)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일부 본인부담							③ 전액 본인 부담
			① 공단 부담금	② 본인 부담금						
계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요양기관 종류	☐ 의원급·보건기관 ☐ 병원급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약국·한국회귀의약품센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인]			
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 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 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청구인 통장사본(학생통장으로는 처리불가)

- 학부모(피공제자의 법정대리인)의 계좌정보와 이름이 적힌 통장상단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주택청약통장, 적금통장, 해지통장은 처리가 불가능함.)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인근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 (<http://www.minwon.go.kr>)

5) 진단서

-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필요하며, 각 청구 건마다 필요함.

【예시】

진 단 서				원부대조필인	
병력번호 000160871		연번호 200638148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성명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연 령	만 13세
환자의 주소				전화:	
병 명	좌측 새골 골절.				한국질병 분류번호 S420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입원	년 월 일		진 단 일	2014년 10월 13일	
항 후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4년 10월 14일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항후 약 01(일)달간의 안정가로 요하는 자임.				
치 료					
의 견					
비 고	추후에 재평가 요함.		용 도	보험사 제출용.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2014년 10월 20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영칭					
전화 및 FAX					
연혁번호		의사성명			

6)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상세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 상에 비급여 금액 발생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상세내역서) 제출하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시】

진료비내역서 (입원)

차트번호:	환자성명:	생년월일:	보험유형: 직장조합					
병원:								
		진료기간: 2017-11-27 ~ 2017-12-02						
항목	코드	명칭	용량	일수	보험구분	단가	계산금액	
01.진찰료								
	AA154	초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00	1	급여	14,860	14,860	
	AL807	의원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7일/1회)	1.00	1	급여	1,100	1,100	
	AL855	의원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5일/1회)	1.00	1	급여	2,090	2,090	
		합 계:					18,050	
02.입원료								
		상급병실료(3인실)	1.00	5	비급여	20,000	100,000	
	AB400	의원입원료(계)	1.00	5	급여	28,350	141,750	
	Y2400000	일반식(1식당)-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2.00	1	급여	3,910	7,820	
	Y2400000	일반식(1식당)-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3.00	4	급여	3,910	46,920	
	Z0011000	일반식가산-조리사(1식당)	2.00	1	급여	500	1,000	
	Z0011000	일반식가산-조리사(1식당)	3.00	4	급여	500	6,000	
		합 계:					303,490	
03.투약료								
	J1070	퇴원환자조제료-내복약(7일분/1회당)	1.00	1	급여	490	564	
	J2000	입원환자 조제 - 복용지도료(1일당)	1.00	5	급여	1,440	8,280	
	622801960	라세틴염정	2.00	5	급여	237	2,370	
	622801960	라세틴염정	2.00	7	급여	237	3,318	
	645201370	에이프로젠세파클러캡슐250mg	2.00	5	급여	438	4,380	
	645201370	에이프로젠세파클러캡슐250mg	2.00	7	급여	438	6,132	
	670602780	휴로펜정	2.00	5	급여	125	1,250	
	670602780	휴로펜정	2.00	7	급여	125	1,750	
		합 계:					28,044	
04.주사료								
	KK010	피하또는근육내주사()	1.00	1	급여	1,180	1,357	
	645100582	대한말균생리식염수	1.00	4	급여	1,595	6,380	
	670603464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1%	1.00	1	급여	432	432	
	KK053	정맥내정적주사-501ml-1000ml[1병또는포장단위당]()	1.00	4	급여	3,060	14,076	
	KK059000	정맥내유치침	1.00	4	급여	430	1,720	
	642100710	비공해사주	1.00	4	비급여	5,000	20,000	
		합 계:					43,965	
05.마취료								
	LA204	정맥내 주입(IV PCA)-시술당일-주입로 확보 및 Infusor 장착을 모두	1.00	1	80/100	24,890	28,624	
	LA206	정맥내 주입(IV PCA)-익일 이후()	1.00	2	80/100	4,680	10,764	
	J4303020	THERAFUSER (CONTINUOUS TYPE) [전규격]	1.00	1	80/100	28,520	28,520	
	640001071	세제이0.9%생리식염주사액	1.00	1	100/100	1,304	1,304	
	645902651	케로라주	3.00	1	100/100	863	2,589	
		합 계:					71,801	
08.치치수술료								
	M0111	단순치치[1일당]()	1.00	4	급여	4,710	21,666	
	K7202009	탄력붕대4" 10cm * 215cm	2.00	5	급여	480	4,800	
	K7202009	탄력붕대4" 10cm * 215cm	4.00	1	급여	480	1,920	
	N0605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중수골,중족골,지골]()	1.00	1	급여	191,850	220,628	
	C1605228	Small Half Pin	1.00	1	급여	48,740	48,740	
	N0645010	사지골절도수정복술[중수골,중족골,지골]()	1.00	1	급여	58,340	67,091	

라. 요양급여 관련 법령 자료

【자료1】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한다),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도재전장관, 사기 재료로 이 빗갈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義肢)·의치(義齒)·안경·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진료비 등 그 밖의 지급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료2】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별표] <신설 2012.3.30.>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제2조의2 관련)

구 분	내 용
가. 선택 진료비	1) 선택진료비는 다음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요양한 기간 나) 사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병상태(傷病狀態)가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택진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	1)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의 진단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나) 상병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초음파 검사료는 진료기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상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다. 무통 주사제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화상 치료재등	화상 또는 열상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 치료재와 치료보조재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성형 수술비	1)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화상 반흔제거 수술은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인정한다. 나) 인정횟수는 2회 이내로 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흉터, 반흔 또는 변형 등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응급 의료 관리료	영 제14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
사. 물리치료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리치료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2)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인 경우
아. 치아보철	1) 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도재전장관(陶材前將冠) 치아보철비는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2회에 한한다. 2) 캐스트코아는 134,000원, 포스트는 124,000원, 레진은 120,000원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3)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에 따라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1) ~ 3) 이외의 보철비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는 1)에 준하여 인정한다.

자. 재활보조 기구 및 통 합 재활훈련	1)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지(義肢)·보조기·구두·휠체어·목발·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의안·가발·흰지팡이·인공후두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2) 안경과 보청기는 해당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그 가액은 시중 상품 중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품질로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한다. 3)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 수(筋電電動義手) 배터리의 경우 내구연한을 2년, 휠체어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1년으로 한다. 4) 의지 및 보조기 장착 후 통합재활훈련 대상은 휠체어를 사용 마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차. 진단서 발급 수수료	1) 진단서는 진료비가 본인부담 진료비(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제외)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제출한다. 다만, 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한다.
카. 외국 체 류 중에 치 료를 하고 요양급여 승 인을 받은 경우	1) 환율의 적용시점은 외국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한 때로 하며,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과 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의 기준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에 따른 금액 나) 국내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비 고

1. 요양급여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수가에 따른다.
2.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법 및 영 등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 및 비용 중에서 피공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공제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치료 받기 전에 치료비를 지급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방식은 호프만식에 의한다.
 - 가.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
 -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함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마. 비급여 진료비 인정기준표

NO	항 목	인 정 범 위	비 고
1	상급 병실료	○. 전신화상을 입은 자 ○. 세균감염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자 ○. 심한 정신질환자	의사소견서 제출
2	성형 수술비	○. 열창(열상)으로 인한 성형외과 치료비 1회 ○. 화상으로 신체기능장애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 2회 이내 ○. 열창(열상)으로 인한 흉터, 기능회복을 위한 성형수술비 : 1회	의사소견서 제출
3	영상진단료 (MRI, 초음파, CT)	○. 부상부위 1회	의사소견서 제출
4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 청구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 청구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공제회에서 요구한 경우	각 1부 비용 지급
5	선택진료료	○. 입원 : 전액 ○. 외래 : 최초 선택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건복지부령 제 174호(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적용
6	비급여 주사료	○. 무통주사료 : 1회(영양제,비타민제 제외)	
7	치아보철료	○. 보철료 : 40만원 이하(2회) ○. POST(기둥) : 134,000원 이하(1회) ○. 임시레진 : 12만원 이하(1회) ○. 고정치료비 : 40만원(1회) (심미적 교정비는 비인정)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8	의료보조기	○. 목발 : 15,000원 이하 ○. 그 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준함	의사소견서 제출
9	응급수송료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2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800원 추가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10km 이내) : 50,000원 · 10km초과시 : km당 1,000원 추가 (응급상황 아닌 단순 교통수단으로 사용시 비인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별표1)의 응급 증상인 경우(사고당일)
10	응급실 사용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별표1)의 응급증상인 경우 ○. 야간,휴일(사고당일)에 부상당한 경우	
11	국외 치료비	국내 진료비 기준	

바. 비인정하는 비급여 진료비 예시

- ①**상급병실료** : 진료받은 병원의 일반실 기준병실료와의 차액분
- ②**주사료** : 성장호르몬,인대강화주사,통증완화주사,부종완화주사,연골배양주사, 영양제, 비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콜라겐(젠타큐, 리젠셀) 등
- ③**물리치료** :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이온삼투요법, 냉각치료 등
- ④**성형수술** : 레이저 및 박피 술 2회 초과분
- ⑤**검사료** : 간염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체열검사 등
- ⑥**재료대** : 방수캐스트, 목발 . 슈즈 . 팔걸이 1회 초과분
- ⑦**보장구(보조기)** : - 팔, 다리, 척추, 골반부위 이외
- 기존 착용하던 안경 또는 치아교정기 파손비
- ⑧**영상진단료(MRI, CT, 초음파)** : 1회 초과분, 부상부위 이외
- ⑨**식대** : 환자 1식 초과분, 보호자 식대
- ⑩**영수차액** : 할인액, 미납액, 중복청구액,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⑪**진단서대** : 청구액이 50만원 이하시, 1부 초과시, 향후추정서 발급비
- ⑫**처치 및 수술료** : 가덱스, 마취흡입제, 1회용 수술포
- ⑬**응급이송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응급증상인 경우」이 아닌 경우
- ⑭**기타** : 사물함관리비, 수저 및 CD구입비, 간이영수증, 환자복 등 소모품비

2. 장해급여

학교안전법 제3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가. 장해급여 지급비용 산정 방식



1)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일실수익)

○ 월급여액 × 노동력상실률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2)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 [별표5] 참조

나. 장해급여 청구 절차

※ 구비서류

- 1) 장해급여청구서 원본
- 2) 진료비영수증 원본
- 3) 청구자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장해진단서 원본

※ 정확한 장해 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재검진 가능

1) 장애급여청구서

※ 장애급여청구서 작성 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① 모든 절차는 요양급여 청구와 동일(14~17페이지 참조)하고, 청구사항-청구구분에서만 요양급여 대신 **[장애급여]**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림 1 참조)

※ 치료비도 함께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를 중복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림 2 참조)

【그림1】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 중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애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간병급여 ☐ 위로금 ☐ 보전비용 ☐ 상당 및 상당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그림2】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 중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애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간병급여 ☐ 위로금 ☐ 보전비용 ☐ 상당 및 상당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2) 진료비 영수증 (20~21페이지 참조)

○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받은 일자의 병원 진료비 영수증 제출

3) 청구인 통장사본

○ 학부모(피공제자의 법정대리인)의 계좌정보와 이름이 적힌 통장상단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주택청약통장, 적금통장, 해지통장은 처리가 불가능함.)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인근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
(<http://www.minwon.go.kr>)

5) 장애진단서

○ 종합병원(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3. 간병급여

학교안전법 제38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간병급여 청구 절차

※ 구비서류

- 1) 간병급여청구서 원본
- 2) 진료비영수증 원본
- 3) 청구자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장애진단서 원본

※ 정확한 장애 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재검진 가능

- 6)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1) 간병급여청구서

※ 간병급여청구서 작성 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① 모든 절차는 요양급여 청구와 동일(14~17페이지 참조)하고, 청구사항-청구구분에서만 **요양급여** 대신 **[간병급여]**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림 1 참조)

※치료비도 함께 청구할 경우 간병급여를 중복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림 2 참조)

【그림1】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 중간 :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최종 :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간병급여 ☐ 위로금 ☐ 보전비용 ☐ 상달 및 상달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그림2】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 중간 :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최종 :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간병급여 ☐ 위로금 ☐ 보전비용 ☐ 상달 및 상달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2) 진료비 영수증 (20~21페이지 참조)

-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받은 일자의 병원 진료비 영수증 제출

3) 청구인 통장사본

- 학부모(피공제자의 법정대리인)의 계좌정보와 이름이 적힌 통장상단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주택청약통장, 적금통장, 해지통장은 처리가 불가능함.)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인근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
(<http://www.minwon.go.kr>)

5) 장해진단서 (27~29페이지 참조)

- 정확한 장해 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재검진 가능

6)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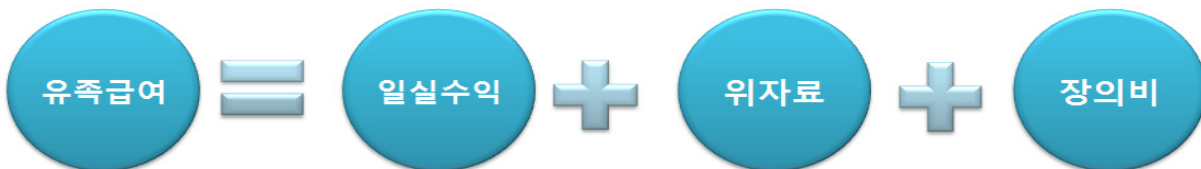
- 환자가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발급 가능

4. 유족급여(사망)

학교안전법 제39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유족급여 지급비용 산정 방식



1)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일실수익)

- 월수입 × (1-생활비율)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생활비율 : 학교안전법 시행령의 [별표7] 참조

2)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별표6] 참조

3)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장의비

- 평균임금의 100일분

나. 유족급여 청구 절차

※ 구비서류

- 1) 유족급여청구서 원본
- 2) 진료비영수증 원본
- 3) 청구자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 유족급여청구서

※ 유족급여청구서 작성 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① 모든 절차는 요양급여 청구와 동일(14~17페이지 참조)하고, 청구사항-청구구분에서만 요양급여 대신 **[유족급여]**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림 1 참조)

※치료비도 함께 청구할 경우 유족급여를 중복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림 2 참조)

【그림1】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 중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간병급여 ☐ 위로금 ☐ 보전비용 ☐ 상당 및 상당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그림2】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 중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간병급여 ☐ 위로금 ☐ 보전비용 ☐ 상당 및 상당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2) 진료비 영수증 (20~21페이지 참조)

○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받은 일자의 병원 진료비 영수증 제출

3) 청구인 통장사본

○ 학부모(피공제자의 법정대리인)의 계좌정보와 이름이 적힌 통장상단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주택청약통장, 적금통장, 해지통장은 처리가 불가능함.)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인근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
(<http://www.minwon.go.kr>)

5)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

【예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병력번호		연 번 호		원본 대조필인	
① 성 명				② 성 별	[]남[]여
③주민등록번호	-	④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⑤ 직 업	
⑥ 등록 기준지					
⑦ 주 소					
⑧ 발 병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⑨ 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⑩ 사 망 장 소	주소				
	장소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 기타()			
⑪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⑫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⑬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 익사 ☐ 화재 ☐ 기타()		의도성 여 부	☐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사고발생 장소	주소			
		장소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기타()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
주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5. 장의비

학교안전법 제40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장의비 청구 절차

※ 구비서류

- 1) 장의비청구서 원본
- 2) 유족급여 청구서류 일체 (42~45 페이지 참조)

1) 장의비청구서

※ 장의비청구서 작성 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① 모든 절차는 **요양급여** 청구와 동일(14~17페이지 참조)하고, 청구사항-청구구분에서만 **요양급여** 대신 **[장의비]**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림 1 참조)

※유족급여도 함께 청구할 경우 장의비를 중복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림 2 참조)

【그림1】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종간 ☒ 최종 ※종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간병급여 ☐ 위로금 ☐ 보전비용 ☐ 상당 및 상당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그림2】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종간 ☒ 최종 ※종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간병급여 ☐ 위로금 ☐ 보전비용 ☐ 상당 및 상당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6. 위로금

학교안전법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 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가. 위로금 청구 절차

※ 구비서류

- 1) 위로금청구서 원본
- 2) 사망진단서
- 3) 청구자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위로금청구서

※ 장의비청구서 작성 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① 모든 절차는 **요양급여 청구와 동일(14~17페이지 참조)**하고, 청구사항-청구구분에서만 **요양급여 대신 [위로금]**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림 1 참조)**

【그림1】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 중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간병급여 ☒ 위로금 ☐ 보전비용 ☐ 상담 및 상담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2) 사망진단서 (44 페이지 참조)

-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

3) 청구인 통장사본

- 학부모(피공제자의 법정대리인)의 계좌정보와 이름이 적힌 통장상단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주택청약통장, 적금통장, 해지통장은 처리가 불가능함.)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인근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
(<http://www.minwon.go.kr>)

나. 위로금 관련 법령 자료

【자료1】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7. 상담지원

학교안전법 제10조의3(상담지원등)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상담지원 청구 절차

※ 구비서류

- 1) 심리상담 청구서 원본
-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 3) 청구자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의 심리상담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1) 심리상담 청구서

※ 심리상담 신청서 작성 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① 모든 절차는 **요양급여** 청구와 동일(14~17페이지 참조)하고, 청구사항-청구구분에서만 **요양급여** 대신 **[상담 및 상담치료비]**로 선택하면 됩니다.(그림 1 참조)

【그림1】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중간 ☐최종 ※ 중간 :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최종 : 치료가 종료된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위로금 ☐보전비용 ☒상담 및 상담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2) 진료비 영수증 (20~21페이지 참조)

-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받은 일자의 병원 진료비 영수증 제출

3) 청구인 통장사본

- 학부모(피공제자의 법정대리인)의 계좌정보와 이름이 적힌 통장상단부분을 복사하여 제출 (※ 주택청약통장, 적금통장, 해지통장은 처리가 불가능함.)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50만원 이상 발생 시 인근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에서 발급
(<http://www.minwon.go.kr>)

5)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의 심리상담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

-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나. 심리상담 관련 법령 자료

【자료1】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4(상담지원등)

-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한다.
-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제한 사유

-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2) 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 3) 지병 또는 신체적인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2. 기왕증

-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 기왕증에 따른 공제급여 제한 시 공제회 임의해석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를 판단하여 결정

3. 과실상계 적용

-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음(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
-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으나,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 시 각 사안에 따라 객관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실상계 적용

4. 다른 법령과 중복되어 제한되는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 분	관 련 법 령
수련원 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자동차 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레프팅 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체육시설 사고(수영장,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현장실습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선박실습 사고	선원법 제2조,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공립교직원 사고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사립교직원 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비정규직원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5. 공제급여제한 관련 법령 자료

【자료1】학교안전법 제43조(공제급여의 지급제한)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② 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료2】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2조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자료3】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등) 및 제5조

-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 ②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3장

학교폭력사고의 이해

제1절

학교폭력사고

1. 학교폭력사고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학교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락·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 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 옷, 문구류 등을 빌린 후 되돌려주지 않기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 속칭 빵 서툼, 와이파이 서툼 등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그림·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성,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 불안이 지속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Tip

- 학교별 신고전화
- 전국공통 117

폭력을 사통하지 않는 어른분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멋진 주인공입니다.

서로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친구에게 존중받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지킴이나, 성폭력이다 등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자 처벌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 1) 사안에 따라 경찰의 조사를 받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학교나 wee center, wee school, cys-net 등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신고한 친구에 대한 보복성 폭력은?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 | |
|--------------------|------------------|
| ① 서면사과 | ⑥ 사회봉사 |
| ②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⑦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③ 학급교체 |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 ④ 전학 | ⑨ 퇴학 처분 |
| ⑤ 학교에서의 봉사 | |



가해자 학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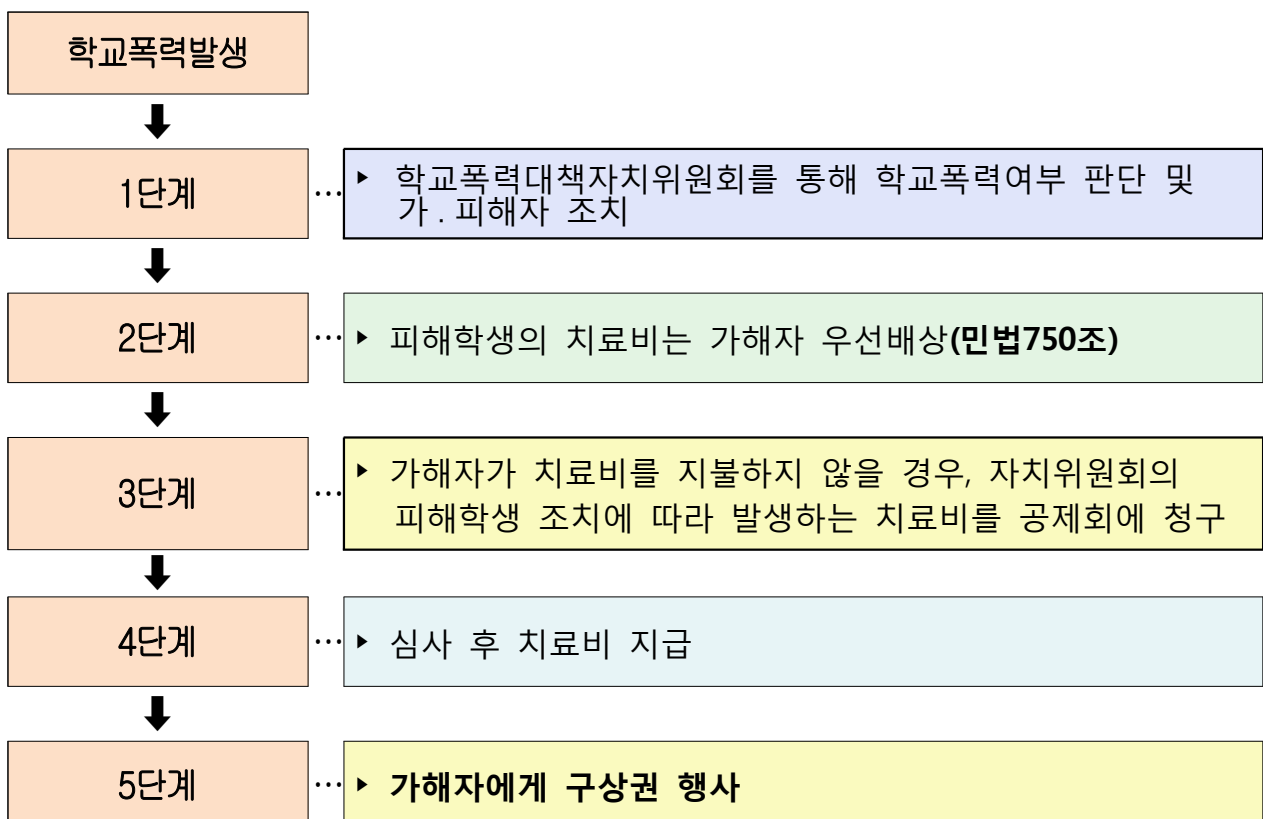
- ① 학생이 강제 전학 조치될 수 있습니다.
- ② 학부모님도 학생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공제회가 지원하는 경우 학교폭력법 제16조에 의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모든 비용을 구상하게 됩니다.

1. 학교폭력 피해 지원 범위

보상범위	세부내역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감 지정 전문심리상담 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소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 후 1년 연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에 소요 비용	
일시보호	▶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보호 소요 비용	30일

2.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절차



제3절

학교폭력 피해 청구 절차

1. 학교폭력 사고통지 작성 절차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 1) 상단메뉴 **[학교폭력사고통지]** 버튼 클릭 **(그림 1 참조)**
- 2) **사고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고발생신고서 작성하기
- 3) 작성이 끝나면 **통보버튼** 클릭하여 **문서상태가 미접수**가 되도록 변경**(그림 1 참조)**

※ 유의사항 : 학교폭력사고통지는 학교안전사고와는 달리 가해학생측과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으므로, 피해학생측에서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작성을 진행하면됨.

그림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제초등학교1님 반갑습니다. 로그인

학교안전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1) |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폭력피해청구 | 법령 | 안내 | 학교정보수정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학교폭력사고통지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학교폭력확인 | 전체 | 미통보 | 보완 | 대상아님 | 청구시효

목쪽에 보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아래에 있는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하는 방법은 **날짜를 클릭**하시면 달력이 나타나며 달력에서 사용자분이 원하시는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2) **사고등록** | 수정 | 삭제 | **(3) 미통보** | 학교폭력피해청구 | 재작성 | 인쇄 | 처리내역 | 사유

기간 2015-02-01 ~ 2018-01-31 | 사고자 이름 | 검색 | 상세검색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통지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문서상태	청구상태
☐ 2017-0130704	학교폭력	사고자 / 2학년 3반	2017-12-06 10:03	홍길동/대리	등교	일반교실	미접수	청구
☐ 2017-0128836	학교폭력	테스트 / 2학년 2반	2017-11-27 07:13	테스트/테스트	등교	일반교실	접수	청구

2.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절차

※ 구비 서류

- 1)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원본
 - 2) 진료비영수증 원본
 - 3) 청구자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5) 진단서
 - 6)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제출시 업무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가능함.

1)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방법 (학교용)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1. 상단에 **[학교폭력피해청구]**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림 1 참조)
2. 중단에 **[청구서 작성]**버튼을 클릭 후 사고 학생 이름으로 사고통지가 접수된 건을 찾아 **학생이름을 클릭**하세요. (그림 1,2 참조)
3. 새로 열린 창에서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에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림 3 참조)
4. 청구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목록에 작성되어 있는 사고학생을 선택 후 **[인쇄]**버튼을 통해 인쇄하여야 합니다. (그림 1 참조)

(※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구-호환성보기 설정에서 해당 주소를 추가하면 됩니다.)

5.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는 총 2장이 출력되며, 첫 번째 장 상단과 중단에 각각 **청구인서명 및 학교직인**란이 표기되어있습니다.

(※ 50만원 미만시 : 학교직인만 날인

50만원 초과시 : 청구자 및 학교직인 날인 모두 필요)

【그림1】공제급여관리시스템 예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1) 학교폭력피해청구

공제초등학교1님 반갑습니다. 로그인

학교안전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폭력피해청구 | 법령 | 안내 | 학교정보수정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학교폭력피해청구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학교폭력피해청구 확인 전체 보완 대상마감

목표에 보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아래에 있는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하는 방법은 날짜를 클릭하시면 달력이 나타나며 달력에서 사용자들이 원하시는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청구서작성 수정 삭제 인쇄 처리내역 사유

기간 2015-02-02 ~ 2018-02-01 사고자 이름 검색 상세검색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청구자	청구구분	청구금액	결정금액	처리상태
(4) 2017-0128836	학교폭력	테스트 / 2학년 2반	2017-11-27 07:13	홍길동/몽인	최종/심리상담 및 조언	12,100	0	서류미도착

【그림2】청구서 작성 버튼 예시

기간 2017-02-01 ~ 2018-02-01 사고자 이름 검색 상세검색

사고발생번호	구분	(2)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동지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문서상태
2017-0130704	학교폭력	사고자 / 2학년학년3반	2017-12-06 10:03	홍길동/대리	등교	일반교실	미접수

【그림3】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예시

학교폭력피해청구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학교폭력피해청구

사고발생코드	2017-0069059 조회		
작성자	이름: 직위: 연락처:		
· 피공제자			
이름	테스트2	생년월일	111111
구분	일반학생		
학교	공제초등학교1		

· 파일업로드 10MB 미만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파일로 첨부된 영수증 사본은 참고용으로 접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공제회로 영수증 원본을 우편 송부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의료비용증 원본(병원영수증,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용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입니다

(3)

목 차

1. 접속 및 로그인	53
2. 학교안전사고통지	55
3. 공제급여청구	62
4. 학교폭력사고통지	68
5. 학교폭력피해청구	75
6. 법령	81
7. 안내	82
8. 학교정보수정	84

1 접속 및 로그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

1. 인터넷 구동 후 주소창에 <http://www.schoolsafe.or.kr> 을 입력하거나

 검색 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찾아 클릭

2. 학교사용자용 시스템 로그인은 각 해당 학교 내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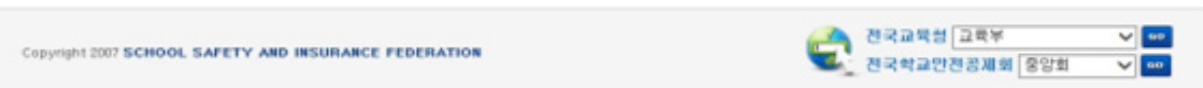
※ 타 학교 및 가정 등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공제급여청구서 다운로드>
<시·도 공제회 연락처>



(1)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 방법

해당 학교에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Enter을 누르거나  을 클릭하면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이 됩니다.

※  체크하면 아이디가 저장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이디를 모를 경우

아이디 찾기 버튼을 눌러
학교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초기비밀번호는 1234이며, 다를 경우에는 공제중앙회(070-7996-0323)로 문의하여 초기화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It includes a header with navigation links, a main banner with a school illustration, and several data tables and lists. Red boxes and numbers (1-8) highlight specific elements:

-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
- (2) 공제초등학교 1년 반감승니다. 로그인 (Compensation Elementary School 1-year Half Reduction Increase. Login)
- (3) Table showing compensation statistics for various schools.
- (4) Table showing accident and compensation records.
- (5) Table showing public notices.
- (6) Login fields for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nd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 (7)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logo and name.
- (8) Illustration of two children holding a flag.

	매월보	보장	대상아동	청구사유
사고통지	15	4	10	9
공제청구	-	0	11	-
폭력통지	8	1	0	0
폭력청구	-	0	3	-

사고발생일	사고자	사고원인	상태
2016-06-07	ㅇㅇ		대보
2016-03-01	11		대보
2015-12-15	경기도		대보
2015-02-03	테스트2	사립과의 충돌(부딪침, 맞음)	대보
2016-06-10	추가등록	사립과의 충돌(부딪침, 맞음)	대보

공지사항	날짜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전 안내	2016-03-04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2016-02-19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 이전 안내	2015-01-06

1. 좌측 상단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을 클릭하면 어느 화면에서든 초기접속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접속한 해당 학교명으로 로그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반드시 해당학교가 맞는지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학교의 학교안전(폭력)사고 통지 및 공제급여(폭력피해) 청구 건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 최근 5건의 학교안전사고통지 및 공제급여청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5.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6. 전국 시·도 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7.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메뉴입니다.
8. 학교안전(폭력)사고 통지와 공제급여(폭력피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빠른 메뉴입니다.

2 학교안전사고통지

1. 메인메뉴의 학교안전사고통지 클릭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제초등학교1님 반갑습니다. 로그인

학교안전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폭력피해청구 | 법령 | 안내 | 학교정보수정 | 통계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사고통지 확인

전체 미통보 보완 대상아님 청구시효

목록에 보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아래에 있는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하는 방법은 날짜를 클릭하시면 달력이 나타나며 달력에서 사용자분이 원하시는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사고등록 사고자추가등록 수정 삭제 통보 공제급여지급청구 재작성 인쇄 처리내역 사유

기간 2013-06-23 ~ 2016-06-22

사고자 이름 검색 상세검색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통지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문서상태	청구상태
☐ Temp2-2016-0057301-(1)	사고	ㅇㅇ / 2학년 1반	2016-06-07:	/			미통보	원부모 청구
☐ Temp2-2016-0012234-(1)	사고	11 / 1학년 123반	2016-03-01:	/			미통보	원부모 청구
☐ Temp2-2015-0131713-(1)	사고	경기도 / 1학년 1반	2015-12-15:	/			미통보	원부모 청구
☐ Temp1-2015-0003372-(1)	사고	테스트2 / 1학년 2반	2015-02-03 00:01	1/1	자습시간(자율학습)	일반교실	대상아님	원부모 청구
☐ 2016-0059956-(2)	사고	추가등록 / 1학년 1반	2016-05-31 01:01	김재중/김재중	종교	일반교실	접수	대청구
☐ 2016-0060754-(1)	사고	재작성 / 1학년 1반	2016-06-15 12:06	111/111	종교	일반교실	접수	대청구
☐ 2016-0060753-(1)	사고	재작성 / 1학년 1반	2016-06-15 12:06	111/111	종교	일반교실	재작성	대청구
☐ 2016-0059956-(1)	사고	학부모청구테스트 / 2학년 1반	2016-05-31 01:01	김재중/김재중	종교	일반교실	접수	대청구
☐ 2016-0059997-(1)	사고	111 / 2학년 11반	2016-05-30 02:01	테스트/테스트	종교	일반교실	미통보	대청구
☐ 2016-0059293-(1)	사고	김학성 / 1학년 1반	2016-06-01 12:08	김종재/주임	체육대회	강당(체육관)	미접수	대청구

1. 통지한 사고통지서를 상태별로 볼 수 있는 탭입니다.

- 전 체 : 작성한 사고통지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 미 통 보 : 작성은 하였으나, 공제회로 통보되지 아니한 사고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사고통지서 작성 후 반드시 통지하여야 공제회로 전송됩니다.
- 보 완 : 통지하였으나, 공제회에서 보완 요청한 사고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 대상아님 : 통지한 것 중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된 사고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청구시효 : 공제급여청구 가능기간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사고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사고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날짜 클릭 후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2009		11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피공제자(사고자) 이름으로 사고통지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상세검색 버튼을 눌러 사고통지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번호	
사고자이름	
생년월일	
사고발생일	-
확인 취소	

5. 통지된 사고통지서의 문서상태 및 청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상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문서상태** : 사고통지와 관련된 문서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통보** : 사고통지서를 작성하였으나 공제회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
 - ※ 공제회에서 확인이 안되므로 반드시 통보 버튼을 눌러 공제회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미접수** : 공제회에 통보하였으나 담당자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
 - ※ 해당지역 공제회 담당자가 내용확인 후 접수처리까지 약 1주 정도 소요됩니다.
 - **접수** : 공제회 담당자가 확인하여 접수한 상태
 - ※ 접수상태에서는 사고통지서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보완** : 학교안전사고통지서의 내용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
 - ※ **보완** 을 누르면 팝업창으로 보완요청 사유 확인가능
 - **대상아님** : 해당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거나 중복 등으로 반려한 경우
 - ※ **대상아님** 을 누르면 팝업창으로 대상아님 사유 확인 가능
 - **재작성** : 이미 사고통지서가 공제회에 접수되어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면 기존 사고통지서를 선택 후 재작성 할 수 있으며 기 접수된 사고는 "재작성" 상태가 됨
 - ※ 재작성시 사고일시, 사고경위 등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복** : 동일사고가 중복통지 또는 접수되어 있어 중복처리된 사고통지서입니다.
 - ※ 중복상태인 사고통지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청구상태** : 해당 사고통지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청구** : 해당 사고통지건의 청구서가 아직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
 - **청구** : 해당 사고통지건의 청구서가 작성된 상태
 - **학부모 청구** : 해당 사고통지건의 청구서를 학부모가 직접 청구한 상태

6. 학교안전사고통지 메뉴

-  **사고등록** : 사고통지서를 작성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기본사항]

사고발생코드	
보고일자	2016.02.05
학교	공제초등학교(전화: 0531000-0000, FAX: 0531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번지
작성자	이름: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확인자	교감이름: 학교장이름:

- 사고발생코드 : 사고통지서 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보고일자 : 보고일자는 통지서를 작성하는 당일로 자동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학 교 : 로그인한 학교명이 자동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작 성 자 : 사고통지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및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확 인 자 : 현재 교감 및 교장선생님 이름을 기입합니다.

[사고자]

- 사고자		☐ 급식사고	
사고자구분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성별	☐ 남 ☐ 여
학년		반	반

- 급식사고 등 : 급식사고등 사고자 수가 다수일 경우 체크하여 사고자 수를 입력 합니다.

☒ 급식사고 등 테스트 외 명

- 사고자구분 : 사고자의 구분(일반학생, 체육특기학생, 특수학교(학급)학생, 교직원, 교직원(일반직), 교직원(계약직), 교육활동참여자 중 택1)을 선택합니다.

※ 사고자구분이 학생일 경우에만 학년, 반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 름 : 사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 생 년 월 일 : 사고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 성 별 : 사고자의 성별을 선택합니다.
- 학년 / 반 : 사고자의 학년 반을 선택 및 입력합니다.

[지도교사]

· 지도교사(해당 교육활동 지도교사)	
이름	

- 사고당시 교육활동의 지도교사 이름을 기입합니다.

[사고관련자]

· 사고관련자(없을 경우 선택가능)					신규 수정 삭제
	구분	이름	성별	학년/반	

- 해당사고의 사고자를 제외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자를 입력합니다. 입력은 신규버튼을 눌러 여러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고개요]

· 사고개요	
사고일시	▼ 요일 시 ▼ 분
활동시간	전체
사고장소	전체
매개물	전체
사고당시활동	전체
의도	전체
사고형태	전체
사고부위	전체

- 사고일시 : 사고일시의 빈칸을 눌러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시간과 분을 선택합니다.

※ 시간은 0~23시까지 24시간제로 되어있으니 주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2009	11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활동시간, 사고장소, 매개물, 사고당시 활동, 의도, 사고형태, 사고부위를 각각 '전체'버튼을 눌러 사고내용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사고경위 등]

· 사고경위 (예문보기)	글자수 2000자 내로 작성 바랍니다.
·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글자수 2000자 내로 작성 바랍니다.
·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글자수 2000자 내로 작성 바랍니다.
· 기타사항	글자수 2000자 내로 작성 바랍니다.
관련행인사고번호 :	

- 사고경위부터 기타사항 까지 해당사고에 관하여 작성합니다.
 ※ 사고경위 옆 (예문보기)를 클릭하면 예문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글자음(ㄱ,ㅇ 등) 입력 후 한자 버튼을 눌러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등
- 관련사고번호 : 재작성 또는 사고자 추가등록을 한 경우 기 작성된 사고통지서의 사고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파일업로드]

· 파일업로드	추가 선택삭제	10MB 미만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	------------------------

-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취소]

사고통지서 작성 후 출력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뒤, 반드시 <사고현황>사고통지목록에서 "통보"버튼을 눌러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입력하신 사고통지서가 공제회 담당자에게 전송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확인 버튼을 눌러 사고통지서를 저장 및 작성완료 할 수 있으며, 취소 버튼은 입력된 내용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사고통지서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과 동시에 작성이 완료되나, 통보 버튼을 눌러야 공제회로 전송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 사고통지를 하기 전 학부모님이 직접 공제급여청구 또는 학교폭력피해청구의 경우
사고번호 앞에 **Temp2** 가 붙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고를 클릭 후 수정버튼을 이용하여 위
과정을 수행하면 정상적으로 청구에 따른 사고통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사고번호 : 2016-0000001

학부모직접청구 시 사고번호 : Temp2-2016-0000001

-  **사고자추가등록** : 동일한 사고로 사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최초 통지된 사고를
목록에서 선택 후 사고자를 추가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사고통지서
는 사고자정보, 사고부위 및 사고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이 최초
통지된 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입력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동일한 사고 :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던 중 A학생과 B학생이 공중 볼 다툼을
하다가 A학생은 손가락 골절, B학생은 찰과상을 입은 경우

※ 사고자추가등록은 최초 통지사고가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합니다.

-  **수정** : 작성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문서상태가 미통보, 미접수, 보완일 경우와 공제급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에만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고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재작성” 기능
을 이용하여 사고통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제급여청구가 이루어진 후
사고통지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 : 작성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미통보, 미접수인 경우에만 삭제 가능(이외의 상태에서는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  **통보** : 작성완료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해당 지역 공제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사고통지서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과 동시에 작성이 완료되나, 통보
버튼을 눌러야 공제회로 전송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지급청구** : 공제회로 통보와 접수가 완료된 사고통지서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작성** : 이미 접수된 사고통지서 중 수정이 필요한 사고를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재작성 할 수 있습니다.

※ 통지한 사고통지서가 접수된 후 사고통지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기능으로 문서상태가 미통보, 미접수, 보완일 경우에는 해당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한 후 수정버튼으로 직접 수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급여 청구가 이루어진 후 사고통지서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 : 작성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내역** : 작성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사고접수 및 청구현황의 처리내역을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통지 현황					
사고일을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자	사고번호	2016-0001570	학교명	공제초등학교1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명	사고자구분
	김태스트	111111	남	1학년/1 반	일반학생
사고일 ▼	2016-02-01	작성일	2016-02-01	소멸시효	2019-02-01

선행구분	선행일	비고
통지서 작성(미통보)	2016-02-01	
사고 통보(미접수)	2016-02-01	
사고 접수	2016-02-01	
사고 접수	2016-02-01	

공제급여 청구 현황								
순번과 결정액을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번	청구일	청구구분	청구액	결정액	결정일	지급일	검사일	추가지급액
1	2016-02-01	요양급여	2	0				0
2	2016-02-01	요양급여	1	0				0

소송 현황				
구분	결정내역	결정일	결정액	비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습니다.				

○  **사유** : 문서서 상태가 **보완** 또는 **대상아님**으로 표기될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완/대상아님 사유

보완 또는 대상아님의 사유

3 공제급여청구

□ 공제급여청구 메뉴 페이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제초등학교 1년 만납습니다. 로그인

학교안전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폭력피해청구 | 법령 | 안내 | 학교정보수령 | 통계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공제급여청구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 > 공제급여청구 확인 **전체** **보완** **대상아님** (1)

목록에 보고서 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아래에 있는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하는 방법은 **날짜를 클릭**하시면 달력이 나타나고 달력에서 사용자들이 원하시는 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청구서작성 **수령** **조회** **인쇄** **처리내역** **사용** (6)

기간 2013-06-21 ~ 2016-06-20 (2) **사고자 이름** (3) **검색** **검색결과** (4)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청구자	청구구분	청구금액	결정금액	처리상태
☐ Temp2-2016-0057001	사고	※ / 2학년 1반	2016-06-07	김재훈/903	출간/요양급여	500,000	0	처리완료
☐ Temp2-2016-0012234	사고	11 / 1학년 12반	2016-03-01	박재훈/903	출간/요양급여	125,125	0	처리완료
☐ Temp2-2015-0121713	사고	김기호 / 1학년 1반	2015-12-15	정형욱/903	출간/요양급여	20,000	0	처리완료
☐ Temp1-2015-0000372	사고	배소희2 / 1학년 2반	2015-02-02 00:00	정미경/903	출간/요양급여	25,425	0	처리완료
☐ 2016-0009530	사고	1233	2016-02-02 07:12	11/903	보상/요양급여	1,233	0	일시중지
☐ 2016-0008955	사고	129 / 1학년 12반	2016-05-01 04:09	김재훈/903	출간/요양급여	11,111	0	일시중지

- 청구한 청구서를 처리상태별로 볼 수 있는 탭입니다.
 - 전 체 : 작성한 공제급여청구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 보 완 : 청구하였으나, 공제회에서 보완 요청한 청구서를 볼 수 있습니다.
 - 대상아님 : 청구한 것 중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중복청구 등으로 반려한 청구서를 볼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청구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날짜 클릭 후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2009 11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피공제자(사고자) 이름으로 청구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상세검색 버튼을 눌러 청구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번호	
사고자이름	
생년월일	
사고발생일	-
확인 취소	

5. 청구한 청구서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학부모청구** : 공제급여청구를 학부모가 직접 하였을 때
 - ※ 청구에 따른 진행현황은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미도착** : 청구는 됐으나 관련 첨부서류가 공제회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
 - ※ 첨부서류 :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 **보완** : 공제급여청구서의 내용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
- **대상이남** : 통지한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한 상태
- **심사중** : 공제회에 관련 첨부서류가 도착하여 심사 중인 상태
- **심사완료** : 심사가 완료되어 송금하기 전 상태
- **송금** :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상태

6. 공제급여 청구 메뉴

○  **청구서작성** :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 버튼을 누르면 통지된 사고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 됩니다.

기간 2015-02-06 ~ 2015-02-06
 사고자 이름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통지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상태
Temp2-2015-0131713	사고	김기도 / 1학년학년1반	2015-12-15	/			미접수
Temp2-2015-0125636	사고	서영호 / 1학년학년1반	2015-12-01	/			미접수
Temp1-2015-0095304	사고	125 / 3학년학년4반	2015-09-18 05:09	125/9.25	종교	일반교실	미접수
2015-0032119	사고	홍복미스트 / 1학년학년1반	2015-02-01 00:00	작성자/작성자	종교	일반교실	미접수
2015-0032118	사고	홍복미스트 / 1학년학년1반	2015-02-02 00:00	홍복미스트/홍복미스트	종교	일반교실	미접수

- 리스트에서 청구할 학생의 이름 또는 작성할 사고를 선택합니다.
 - ※ 사고통지서의 상태가 **접수** 상태인 경우만 공제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통지서가 미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사고발생코드	2015-0114954	조회
작성자	이름 : 직위 : 연락처 :	

- 사고발생코드 : 해당 사고의 사고번호가 자동입력됩니다. 사고자의 이름 등이 다른 경우 **조회** 버튼을 눌러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청구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피공제자]

· 피공제자			
이름	김재중	생년월일	999999
구분	일반학생		
학교	금제초등학교1		

- 피공제자(사고자)의 인적사항은 사고통지서에 작성한대로 자동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자]

· 청구자			
이름		피공제자와의 관계	
주소	우편번호찾기		
통지구분			
연락처(집)		휴대폰	
이메일		생년월일	
위임인	성명 :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이 름 : 청구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청구자 이름은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예금주명과 동일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 피공제자와의 관계 : 피공제자(사고자)와의 관계(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친척 기타)를 선택합니다.
- 주 소 : 우편번호찾기 버튼을 눌러 기본주소를 입력한 후 세부주소를 입력합니다.
- 통지구분 : 청구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을 방법(이메일, 휴대폰 문자, 우편)을 선택합니다.
※ 일반적으로 휴대폰 문자로 선택할 경우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연락처(집) : 유선전화번호를 입력하며, 없을 경우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 휴 대 폰 : 청구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형식은 010-1111-2222 또는 01011112222 둘 중 어느 형식으로 입력하여도 됩니다.
- 이 메 일 :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며, 통지구분에서 이메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위 임 인 : 대리인에게 청구를 위임하는 경우 청구인이 위임인이 됩니다.
- 대 리 인 : 위임인으로부터 청구행위를 위임 받은 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일반적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자(교직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제급여 지급 받을 계좌]

· 공제급여 지급 받을 계좌(동장사본 첨부, 청구자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은 행 명 :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은행명을 입력합니다.
- 계좌번호 :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아래 예금주 명의의 계좌와 동일해야 합니다.
- 예금주명 : 청구자 정보 입력란에서 입력한 청구인의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예금주명은 청구자 이름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다르게 입력하였을 경우에도 저장시 자동으로 청구자명과 동일하게 강제 변경됩니다.

[청구사항]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 중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애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보전비용 ☐ 위료금 ☐ 상급 및 상급치료비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중간청구사유	
중간 지급받은 금액	원 중간지급일

- 청구금액 :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을 입력합니다.
※ 청구금액은 병원비 영수증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전부와 비급여 항목 중 보상을 원하는 금액의 합산을 말합니다. 실제 본인이 지급하지 않은 의료 보험공단 부담금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청구구분 :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장기화 되어 향후에 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을 선택하며,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최종을 선택합니다.
- 중간청구 사유 : 중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청구 사유를 작성합니다.
※ 예) 치료가 장기화 되거나 병원측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 등

- 중간지급받은 금액 : 이미 중간청구하여 지급받은 공제급여 금액의 합계와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일자를 입력합니다.

[사고개요]

· 사고개요			
사고일시	2016-02-17 수요일 09시 04분	사고시간	종교
사고장소	일반교실	매개물	가구(책상, 의자, 책장, 학자, 침대 등)
사고당시활동	공부	의도	자기 자신
사고형태	사람과의 충돌(부딪힘, 맞음)	사고부위	귀
사고병명			
진단내용			
사고경위			

- 사고일시, 활동시간, 사고장소, 매개물, 사고당시활동, 의도, 사고형태, 사고부위, 사고 경위는 사고통지서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입력되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사고병명 : 피공제자(사고자)의 병명을 선택합니다.
- 진단내용 : 진단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진단서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합니다.

[파일업로드]

· 파일업로드 **추가** **선택적제출** 10MB 미만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파일로 첨부된 영수증 사본은 참고용으로 접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공제회로 영수증 원본을 우편 송부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공제급여청구와 관련된 파일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취소]

공제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의료비영수증 원본(병원영수증,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영수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 50만원초과시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입니다

- 확인 버튼을 눌러 청구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취소 버튼은 입력된 내용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과 동시에 공제회로 통보되며, 공제 급여청구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서류미도착, 보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수정 가능(그 외 수정이 필요할 경우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서류미도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삭제 가능(그 외 삭제가 필요할 경우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처리내역**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처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통지 현황					
사고일을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자	사고번호	2015-0000315	학교명	공제초등학교1	
	성명	송민광	성별	학년명	사고자구분
	김다원	999999	남	1학년/1 반	일반학생
사고일 ▼	2015-08-05	작성일	2015-08-31	소멸시효	2018-08-05

공제급여 청구 현황								
순번과 금액액을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번	일구월	일구구분	일구액	결정액	결정일	지급일	금사일	주거지급액
1	2015-08-31	요양급여	1,000	0				0
신청구분		신청일	내고					
서류미도착		2015-08-31						
서류도착		2015-09-04						
보통요청		2015-10-25						
보통요청		2015-10-26						
지급심사		2015-10-30						

-  **사유** : **보완** 또는 **대상이님** 상태일 때 해당 사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완/대상이님 사유

4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폭력사고통지 메뉴 페이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제초등학교1를 반갑습니다. 로그인

학교안전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폭력피해청구 | 법령 | 안내 | 학교정보수정 | 통계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학교폭력사고통지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학교폭력관리

전체 | 미통보 | 보완 | 대상아님 | 청구시효 (1)

목표에 보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아래에 있는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하는 방법은 **날짜를 클릭**하시면 달력이 나타나며 달력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6) [검색] [수정] [삭제] [화면] [학교폭력피해청구] [재작성] [인쇄] [처리내역] [사용]

기간 2013-06-23 ~ 2016-06-22 (2)

(3) 사고자 이름 검색 (4) 상세검색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통지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통지상태	처리상태
☐ Temp2-2014-0112802	학교폭력	최은석 / 2학년 6반	2014-11-18	/			미통보	학부모 청구
☐ Temp2-2014-0073013	학교폭력	김나눔 / 2학년 3반	2014-07-01	/			미통보	학부모 청구
☐ Temp2-2014-0072579	학교폭력	김서고 / 1학년 3반	2014-07-01	/			미통보	학부모 청구
☐ 2016-0056362	학교폭력	23155 / 1학년 32반	2016-02-10 03:02	박대준테스트 2/1233123	자습시간(자율학습)	복도	미통보	청구
☐ 2016-0020936	학교폭력	김복혁 / 유아 1반	2016-04-04 03:01	김복혁/김복혁	중고	일반교실	미통보	청구
☐ 2016-0015756	학교폭력	12 / 유아 22반	2016-03-01 01:01	123/123	중고	일반교실	미통보	청구
☐ 2016-0003882	학교폭력	23155 / 1학년 32반	2016-02-10 03:02	박대준테스트 2/1233123	자습시간(자율학습)	복도	미통보	청구
☐ 2016-0003691	학교폭력	23155 / 1학년 32반	2016-02-10 03:02	박대준테스트 2/1233123	자습시간(자율학습)	복도	미통보	청구
☐ 2016-0003690	학교폭력	23155 / 1학년 32반	2016-02-10 03:02	박대준테스트 2/1233123	자습시간(자율학습)	복도	미통보	청구
☐ 2016-0003688	학교폭력	23155 / 1학년 32반	2016-02-10 03:02	박대준테스트 2/1233123	자습시간(자율학습)	복도	미통보	청구

1 2 3

1. 통지한 사고통지서를 상태별로 볼 수 있는 탭입니다.

- 전 체 : 작성한 사고통지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 미 통 보 : 작성은 하였으나, 공제회로 통보되지 아니한 사고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사고통지서 작성 후 반드시 통지하여야 공제회로 전송됩니다.
- 보 완 : 통지하였으나, 공제회에서 보완 요청한 사고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 대상아님 : 통지한 것 중 학교폭력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된 사고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 청구시효 : 학교폭력피해청구 가능기간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사고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사고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날짜 클릭 후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2009		11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피공제자(사고자) 이름으로 사고통지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상세검색 버튼을 눌러 사고통지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번호	
사고자이름	
생년월일	
사고발생일	-
확인 취소	

5. 통지된 사고통지서의 문서상태 및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상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문서상태** : 사고통지와 관련된 문서의 접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통보** : 사고통지서 작성 완료 후 공제회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
 - ※ 공제회 확인 불가 상태이므로 반드시 통보버튼을 눌러 공제회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미접수** : 공제회에 통보하였으나 담당자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
 - ※ 해당지역 공제회 담당자가 내용확인 후 접수처리까지 약 1주 정도 소요됩니다.
 - **접수** : 공제회 담당자가 확인하여 접수한 상태
 - ※ 접수상태에서는 사고통지서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보완** : 사고발생통지서의 내용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
 - ※ **보완** 을 누르면 팝업창으로 보완요청 사유 확인가능
 - **대상아님** : 해당 사고가 학교폭력사고에 해당되지 않거나 중복 등으로 반려한 경우
 - ※ **대상아님** 을 누르면 팝업창으로 대상아님 사유 확인 가능
 - **재작성** : 이미 사고통지서가 공제회에 접수되어 수정이 불가능한 사고의 내용변경이 필요하여
- 기존 사고통지서를 선택 후 재작성 할 경우 기 접수된 사고는 재작성 상태가 되며 청구가 불가능
- ※ 이미 접수된 사고통지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일시, 사고경위 등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중복** : 동일사고가 통지 또는 접수되어 있어 중복처리된 사고통지서입니다.
※ 중복처리된 사고통지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청구상태** : 해당 사고통지에 대한 학교폭력피해청구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청구** : 해당 사고통지건의 청구서가 아직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
- **청구** : 해당 사고통지건의 청구서가 작성된 상태
- **학부모 청구** : 해당 사고통지건의 청구서를 학부모가 직접 청구한 상태

6. 학교폭력사고통지 메뉴

○ **사고등록** : 사고통지서를 작성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기본사항]

사고발생코드	
보고일자	2016.02.05
학교	공제초등학교1(전화 : 063)000-0000, FAX : 063)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번지
작성자	이름 : 직위 : 연락처 : 휴대전화 :
확인자	교감이름 : 학교장이름 :

- 사고발생코드 : 사고통지서 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보고일자 : 보고일자는 통지서를 작성하는 당일로 자동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학 교 : 로그인한 학교명이 자동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작 성 자 : 사고통지서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이름과 직위 및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확 인 자 : 현재 교감 및 교장선생님 이름을 기입합니다.

[사고자]

· 사고자			
사고자구분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성별	☐ 남 ☐ 여
학년		반	반

- 사고자구분 : 사고자의 구분(일반학생, 체육특기학생, 특수학교(학급)학생, 교직원, 교직원(일반직), 교직원(계약직), 교육활동참여자 중 택1)을 선택합니다.
※ 사고자구분이 학생일 경우에만 학년, 반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 름 : 사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 생 년 월 일 : 사고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 성 별 : 사고자의 성별을 선택합니다.
- 학년 / 반 : 사고자의 학년 반을 선택 및 입력합니다.

[지도교사]

· 지도교사(해당 교육활동 지도교사)	
이름	

- 사고당시 교육활동의 지도교사 이름을 기입합니다.

[가해자]

· 가해자			
신규 수정 삭제			
선택	학교명	학년/반	성명

- 해당 폭력사고의 가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규버튼을 눌러 여러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사고의 경우 가해자 또는 가해자 학부모와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로써 확인이 어려울 있습니다. 가해자 학부모 정보 중 주민번호, 직업, 전화번호는 필수입력 사항은 아니지만, 피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부터 빠른 구제 및 원활한 보상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오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사고 개요]

· 폭력사고 개요	
사고일시	달력 요일 시 분
발생시간	전체
사고장소	전체
부상부위	전체
부상정도	전체 ☐ 주
사고의도성	☐ 여 ☐ 부
진단명	
신고기관	

- 사고일시 : 사고일시의 빈칸을 눌러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시간과 분을 선택합니다.
 ※ 시간은 0~23시까지 24시간제로 되어있으니 주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2009	11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고시간, 사고장소, 부상부위 : 각각 '전체'버튼을 눌러 사고내용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 부상정도 및 진단명 : 진단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사고의도성 : 사고의도성 여부를 선택합니다.
- 신고기관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기관(교육청, 경찰서, Wee센터, 기타 중 택1)을 선택합니다.

[폭력사고 경위 등]

· 폭력사고 경위		글자수 2000자 내로 작성 바랍니다.	
· 폭력사고 후 학교 지도내용 및 조치사항		글자수 2000자 내로 작성 바랍니다.	
· 사고 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글자수 2000자 내로 작성 바랍니다.	

- 폭력사고 경위부터 사고 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까지 각각 2000자 이내로 해당사고에 관하여 작성합니다.
 ※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글자음(ㄱ,ㅇ 등) 입력 후 한자 버튼을 눌러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등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 긴급조치 사항]

·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 긴급조치 사항	
개최여부	☐ 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장 긴급조치사항
개최일시	
조치사항	

- 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여부와 개최일시 및 학교장 긴급 조치사항을 입력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상해치료비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고에 대하여만 공제회에서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조치 및 계획]

· 치료 조치 및 계획			
치료상황	☐ 미치료 ☐ 치료 중 ☐ 치료완료		
치료기관	☐ 웰센터	☐ 민간단체	☐ 병원
치료내용	☐ 심리상담	☐ 일시보호	☐ 병원치료

- 치료상황, 치료기관, 치료내용을 선택합니다.

[기타사항]

· 기타사항

글자수 2000자 내로 작성 바랍니다.

- 학교폭력사고와 관련된 기타사항을 입력합니다.

[파일업로드]

· 파일업로드

추가 선택삭제

10MB 미만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학교폭력사고와 관련된 파일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취소]

학교폭력통지서 작성 후 출력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뒤, 반드시 학교폭력현황>학교폭력목록에서 "통보"버튼을 눌러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입력하신 사고통지서가 공제회 담당자에게 전송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확인

취소

- 확인 버튼을 눌러 사고통지서를 저장 및 작성완료 할 수 있으며, 취소 버튼은 입력된 내용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 ※ 사고통지서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과 동시에 작성이 완료되나, 통보 버튼을 눌러야 공제회로 전송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 작성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 문서상태가 미통보, 미접수, 보완일 경우와 공제급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사고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재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사고통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제급여청구가 이루어진 후 사고통지서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 : 작성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상태가 미통보, 미접수인 경우에만 삭제 가능(이외의 상태에서는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 **통보** : 작성완료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해당 지역 공제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 사고통지서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과 동시에 작성이 완료되나, 통보 버튼을 눌러야 공제회로 전송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피해청구** : 공제회로 통보와 접수가 완료된 사고통지서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작성** : 이미 접수된 사고통지서 중 수정이 필요한 사고를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재작성 할 수 있습니다.
※ 통지한 사고통지서가 접수된 후 사고통지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기능으로 문서상태가 미통보, 미접수, 보완일 경우에는 해당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한 후 수정버튼으로 직접 수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청구가 이루어진 후 사고통지서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 : 작성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처리내역** : 작성된 사고통지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사고접수 및 청구현황의 처리내역을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통지 현황					
사고일을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자	사고번호	2016-0001570	학교명	공제초등학교1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명	사고자구분
	김태스트	111111	남	1학년/1 반	일반학생
사고일 ▼	2016-02-01	작성일	2016-02-01	소멸시효	2019-02-01

선행구분	선행일	비고
통지서 작성(미통보)	2016-02-01	
사고 통보(미접수)	2016-02-01	
사고 접수	2016-02-01	
사고 접수	2016-02-01	

공제급여 청구 현황								
순번과 결정액을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번	청구일	청구구분	청구액	결정액	결정일	지급일	검사일	추가지급액
1	2016-02-01	요양급여	2	0				0
2	2016-02-01	요양급여	1	0				0

소송 현황			
구분	결정대액	결정일	결정액
비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습니다.

-  **사유** : 문서서 상태가 **보완** 또는 **대상아님**으로 표기될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완/대상아님 사유

보완 또는 대상아님의 사유

5 학교폭력피해청구

□ 학교폭력피해청구 메뉴 페이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제초등학교1님 안녕하세요. 로그아웃

학교안전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 학교폭력사고통지 | **학교폭력피해청구** | 법령 | 안내 | 학교정보수정 | 통계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학교폭력피해청구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학교폭력피해청구 확인

전체 | 보완 | 대상아님 (1)

목록에 보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아래에 있는 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설정하는 하의 방법은 **날짜를 클릭**하시면 달력이 나타나며 사용자들이 행하시는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6)

기간 2013-06-23 ~ 2016-06-22 (2)

(3) 사고자 이름 검색 (4)

사건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청구자	청구구분	청구금액	결정금액	처리상태
☐ Temp2-2014-0112802	학교폭력	최은석 / 2학년 8반	2014-11-18:	임예슬/부모	중간/치료 및 치료를 위한 ...	50,000	0	원부도청구
☐ Temp2-2014-0073013	학교폭력	정나눔 / 2학년 3반	2014-07-01:	홍길동/본인	중간/심리상담 및 조언	12,343	0	원부도청구
☐ Temp2-2014-0072579	학교폭력	김사고 / 1학년 3반	2014-07-01:	홍길동/본인	중간/요양급여	12,343	0	원부도청구 (5)
☐ 2016-0015756	학교폭력	12 / 유아 22반	2016-03-01 01:01	4422/부모	중간/심리상담 및 조언	1,111	0	대상아님
☐ 2016-0003890	학교폭력	23155 / 1학년 32반	2016-02-10 03:02	테스트1/본인	최종/심리상담 및 조언,일시...	1,000	0	심사중
☐ 2016-0003888	학교폭력	23155 / 1학년 32반	2016-02-10 03:02	2313/부모	중간/일시보호,치료 및 치료...	3,232	0	심사중
☐ 2015-0052397	학교폭력	테스트5 / 2학년 5반	2015-06-01 12:06	1234/본인	중간/심리상담 및 조언	12,345	0	대상아님

1. 청구한 청구서를 상태별로 볼 수 있는 탭입니다.

- 전 체 : 작성한 학교폭력피해청구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 보 완 : 청구하였으나, 공제회에서 보완 요청한 청구서를 볼 수 있습니다.
- 대상아님 : 청구한 것 중 지급대상이 아닌 청구서를 볼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청구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날짜 클릭 후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2009	11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피공제자(사고자) 이름으로 청구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상세검색 버튼을 눌러 청구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번호	
사고자이름	
생년월일	
사고발생일	-
확인 취소	

5. 청구한 청구서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학부모청구** : 학교폭력피해청구를 학부모가 직접 하였을 때
- ※ 청구에 따른 진행현황은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미도착** : 청구는 됐으나 관련 첨부서류가 공제회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
- ※ 첨부서류 :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 **보완** : 학교폭력피해청구서의 내용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
- **대상아님** : 해당 사고가 학교폭력사고에 해당되지 않거나 중복 등으로 반려한 경우
- **심사중** : 공제회에 관련 첨부서류가 도착하여 심사 중인 상태
- **심사완료** : 심사가 완료되어 송금하기 전 상태
- **송금** :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상태

6. 학교폭력피해 청구 메뉴

- **청구서작성** : 학교폭력피해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 버튼을 누르면 통지된 사고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 됩니다.

기간 ~
사고자 이름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통지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문서상태
2016-0056362	학교폭력	23155 / 1학년학년32반	2016-02-10 03:02	박태준테스트 2/1233123	자습시간(자율학습)	복도	미접수
2016-0020936	학교폭력	김폭력 / 유아학년1반	2016-04-04 03:01	김폭력/김폭력	종교	일반교실	미접수
2016-0015756	학교폭력	12 / 유아학년22반	2016-03-01 01:01	123/123	종교	일반교실	접수
2016-0003892	학교폭력	23155 / 1학년학년32반	2016-02-10 03:02	박태준테스트 2/1233123	자습시간(자율학습)	복도	미접수
2016-0003891	학교폭력	23155 / 1학년학년32반	2016-02-10 03:02	박태준테스트 2/1233123	자습시간(자율학습)	복도	송금

- 리스트에서 청구할 학생의 이름 또는 작성할 사고를 선택합니다.
- ※ 사고통지서의 상태가 **접수** 상태인 경우만 학교폭력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통지서가 미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사고발생코드	2015-0114954	조회
작성자	이름 : 직위 : 연락처 :	

- 사고발생코드 : 해당 사고의 사고번호가 자동입력됩니다. 사고자의 이름 등이 다른 경우 **조회** 버튼을 눌러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청구서를 작성하는 담당자 사람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피공제자]

· 피공제자			
이름	김재중	생년월일	999999
구분	일반학생		
학교	금제초등학교1		

- 피공제자(사고자)의 인적사항은 사고통지서에 작성한대로 자동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자]

· 청구자			
이름		피공제자와의 관계	v
주소	우편번호찾기		
통지구분	v		
연락처(집)		휴대폰	
이메일		생년월일	
위임인	성명 :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이 름 : 청구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청구자 이름은 학교폭력피해비용을 지급받을 예금주명과 동일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 피공제자와의 관계 : 피공제자(사고자)와의 관계(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친척, 기타 중 택1)을 선택합니다.
- 주 소 : 우편번호찾기 버튼을 눌러 기본주소를 입력한 후 세부주소를 입력합니다.
- 통지구분 : 청구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을 방법(이메일, 휴대폰문자, 우편 중 택1)을 선택합니다.
※ 일반적으로 휴대폰문자로 선택할 경우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연락처(집) : 유선전화번호를 입력하며, 없을 경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중간지급받은 금액 : 이미 중간청구하여 지급받은 학교폭력피해 비용의 합계와 지급받은 일자를 입력합니다.

[사고개요]

· 사고개요			
사고일시	2016-02-10 수요일 03시 02분	활동시간	자습시간(자율학습)
사고장소	복도	의도	일방폭행
사고형태	폭행	사고부위	입(구갈, 혀)
사고병명			
진단내용			
사고경위			

- 사고일시, 활동시간, 사고장소, 의도, 사고형태, 사고부위, 사고경위는 사고통지서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입력되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사고병명 : 피공제자(사고자)의 병명을 선택합니다.
- 진단내용 : 진단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파일업로드]

· 파일업로드 **추가** **선택삭제** 10MB 미만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파일로 첨부된 영수증 사본은 참고용으로 접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공제회로 영수증 원본을 우편 송부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학교폭력피해청구와 관련된 파일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취소]

공제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의료비영수증 원본(병원영수증,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영수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 50만원초과시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입니다

- 확인 버튼을 눌러 청구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취소 버튼은 입력된 내용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서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과 동시에 공제회로 통보되며, 학교 폭력피해청구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상태가 서류미도착, 보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수정 가능(그 외 수정이 필요할 경우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서류미도착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삭제 가능(그 외 삭제가 필요할 경우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처리내역**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처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통지 현황					
사고일을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자	사고번호	2015-0000315	학교명	공제소통학교1	
	성명	송년광명	성별	학년명	사고자구분
	김다원	999999	남	1학년/1 반	일반학생
사고일 ▼	2015-08-05	작성일	2015-08-31	소멸시효	2018-08-05

공제급여 청구 현황								
순번과 금액대를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번	청구일	청구구분	청구액	결정액	결정일	지급일	금사일	추가지급액
1	2015-08-31	요양급여	1,000	0				0
신청구분		신청일	내 고					
서류미도착		2015-08-31						
서류도착		2015-09-04						
보통요청		2015-10-26						
보통요청		2015-10-26						
지급심사		2015-10-30						

○  **사유** : **보 완** 또는 **대상이님** 상태일 때 해당 사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완/대상이님 사유

6 법 령

- 학교안전과 관련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원하는 파일 형식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또는 열어볼 수 있습니다.



7 안 내

- 학교안전공제회 관리자가 공지한 글, 업무처리 방법, 사·도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공지사항

- 학교안전공제회 관리자가 공지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지사항 | 업무흐름도 | 연락처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공지사항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4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 미팅 안내	관리자	2015-01-06	8817
33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관리자	2014-07-03	884
32	민생거 되지 않는 경우(사고통지서, 공제급여 청구서)	관리자	2014-05-09	13551
31	DB서버 교체로 인한 시스템 접속 일시 중단 알림	관리자	2014-02-03	496
30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 이전 안내	관리자	2013-11-19	3022

2. 업무흐름도

- 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제출서류 템을 이용하여 업무흐름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 학교특례사고통지 | 학교특례제청 | 알림 | 안내 | 학교업무수령 | 통계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업무흐름도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과정명	과정명	업무처리
학생	사고발생	
	발생	www.schoolsafety.or.kr
	사고통지	○ 공제급여연락처(1588-8000) - 학교장(도) - 담당변호사
학교	내부결재	○ 기타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 처리
	통보	○ 사고통지 접수(학교장)에 한하여 학교장 또는 인솔자(학교장)에게 사고통지 접수(학교장)을 수령가능
	공제회 접수	○ 학교장(도)를 통해 공제회 접수

3. 연락처

- 전국 시·도 공제회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연락처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안내 > 연락처

구분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홈페이지
중앙회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7길 33	02-793-5015	02-793-5016	홈
서울	(07260)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3층	02-1670-4972	02-720-0191	홈
부산	(471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63번길 44	051-867-3990	051-862-6155	홈
대구	(4265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청명관 1층	053-231-0924	053-753-8374	홈
인천	(22146)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 8번길 23, 3층(주안동, 유성빌딩)	032-437-7900	032-431-3808	홈
광주	(61987) 광주시 서구 화정로 189번길 30(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110호)	062-380-4158	062-380-4163	홈
대전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042-616-8742~3	042-616-8739	홈
울산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내	052-210-5891~6	052-210-5899	홈
세종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044-320-3318~9	044-320-3469	홈
경기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통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5층	1588-5255	031-840-2127	홈
강원	(24223)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033-258-5477~8	033-258-5469	홈
충북	(2854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교육박물관 4층	043-252-7109	043-253-0177	홈
충남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041-640-8450~3	041-631-9832	홈
전북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6층	063-272-0807	063-220-9441	홈
전남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머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내	061-260-0729~32	061-260-0117~8	홈
경북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1899-7752	054-854-0192	홈
경남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055-210-5283~4	055-2105285	홈
제주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064-710-0072~3	064-710-0079	홈

8 학교정보수정

□ 해당 학교의 정보를 입력 또는 수정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
[공제금여청구](#)
[학교폭력사고통지](#)
[학교폭력피해청구](#)
[법령](#)
[안내](#)
[학교정보수정](#)
[통계](#)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학교정보수정

SCHOOL SAFETY AND ASSISTANCE FEDERATION

홈 > 학교정보수정

사물지도	3339	학교이름	공제초등학교1
지역	공제회	교육청	공제회
설립자	국립	학교급별	초등학교
학교대표자(교장)	김교장선생님		
우편번호	140-012	우편번호찾기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번지		
대표 전화번호	063000-0000	FAX	063000-0000
이메일	test1@school.ac.kr	홈페이지	test1school.ac.kr
현재 PASSWD			
변경 PASSWD			
PASSWD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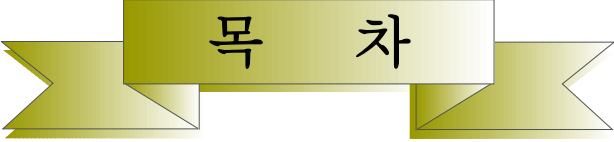
1. 변경할 사항들을 수정 합니다.

- 수정 가능한 항목 : 학교대표자(교장), 학교 주소, 학교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2. 패드워드 변경

-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변경할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르면 성공적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 입력한 학교 정보는 사고통지서 작성 시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목 차

1. 접속 및 로그인	86
2.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피해 청구	88
3. 법령	94
4. 안내	95

1 접속 및 로그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1. Internet Explorer 주소입력란에 http://schoolsafe.or.kr 을 입력 합니다.



2. **모바일인증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합니다.

3. 해당하는 통신사를 눌러 인증절차대로 진행합니다.



□ 인증절차를 모두 마치면 그림과 같이 초기접속 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1. 좌측 상단의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을 클릭하면 어느 화면에서든 초기접속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인증한 명의자 이름으로 로그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작성한 청구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4.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5. 전국 시.도 교육청 및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6.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메뉴입니다.
7. 공제급여(폭력피해) 청구를 할 수 있는 빠른 메뉴입니다.

2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피해 청구

□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피해 청구 메뉴 페이지입니다.

1. 청구한 청구서를 상태별로 볼 수 있는 탭입니다.

- 전 체 : 작성한 청구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 보 완 : 청구하였으나, 공제회에서 보완 요청한 청구서를 볼 수 있습니다.
- 대상아님 : 청구한 것 중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된 청구서를 볼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청구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날짜 클릭 후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2009	11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피공제자(사고자) 이름으로 청구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상세검색 버튼을 눌러 청구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번호	
사고자이름	
생년월일	
사고발생일	-
확인 취소	

5. 청구한 청구서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서류미도착** : 청구는 됐으나 관련 첨부서류가 공제회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
- ※ 첨부서류 :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 **보완** : 공제급여청구서의 내용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
- **대상이님** : 통지한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접수가 불가한 상태
- **심사중** : 공제회에 관련 첨부서류가 도착하여 심사 중인 상태
- **심사완료** : 심사가 완료되어 송금하기 전 상태
- **송금** :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상태

6.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피해 청구 메뉴

○  **청구서작성** :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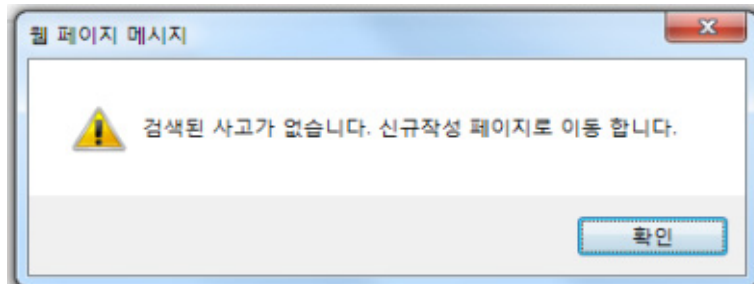
- 버튼을 누르면 통지된 사고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아래 그림과 같이 팝업 됩니다.

자녀이름	
지역	v
학교명	
생년월일	
확인 취소	

- 청구할 학생(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 자녀이름, 지역, 학교명, 생년월일을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학교명은 학교의 고유명만 입력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공제초등학교일 경우 공제만 입력하여도 확인 가능
- (검색 작성)검색 후 입력한 인적사항의 사고가 아래와 같이 검색되면 리스트를 더블클릭하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사고발생번호	구분	사고자	사고발생시간	통지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부위	문서상태
2015-0114954	사고	홍길동 / 1학년학년1반	2015-11-11 13:00	홍길동 / o o	종교	일반교실	턱	접수

- (신규 작성)통지된 사고가 없으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청구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자동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규 버튼을 눌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청구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 **신규** ○ 검색

검색을 클릭하여 자녀의 사고발생통지 확인 후 사고발생통지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신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 > 공제급여청구

- 위 검색 작성 또는 신규 작성을 진행하면 청구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사항]

(검색 작성에 의한 진행)

자녀사고 조회	2015-0114554 조회		
작성자	이름: 김재중		
· 피공제자			
이름	김재중	생년월일	999999
구분	일반학생		
학교	공제초등학교1		

- 자녀사고 조회 : 해당 사고의 사고번호가 자동입력됩니다. 사고자의 이름 등이 다른 경우 **조회** 버튼을 눌러 다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모바일 인증한 명의자 이름이 자동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피공제자(사고자) : 검색한 사고통지서 내용이 그대로 입력되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작성에 의한 진행)

작성자	김재중	사고구분	☐ 사고 ☐ 학교폭력
· 사고자			
사고자구분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성별	☐ 남 ☐ 여
학년		반	반
학교	학교찾기		

- 작 성 자 : 모바일 인증한 휴대폰 명의자의 이름이 자동 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사고구분 : 해당 사고가 학교안전사고 또는 학교폭력인지 선택합니다.
※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고의 서식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입력
- 사고자구분 : 사고자의 구분(일반학생, 체육특기학생, 특수학교(학급)학생 중 택1)을 선택합니다.
- 이 름 : 사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 생년월일 : 사고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 성 별 : 사고자의 성별을 선택합니다.
- 학년 / 반 : 사고자의 학년 반을 선택 및 입력합니다.
- 학 교 : 학교찾기를 클릭하여 사고자의 학교를 입력합니다.

- 기본사항 입력 후
[청구자]

· 청구자			
이름	홍길동	피공제자와의 관계	▼
주소	우편번호찾기		
통지구분	▼		
연락처(집)		휴대폰	
이메일		생년월일	주민번호 일치여 입력

- 이 름 : 모바일 인증한 휴대폰 명의자의 이름이 자동 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휴 대 폰 : 모바일 인증한 휴대폰 번호가 자동 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피공제자와의 관계 : 피공제자(사고자)와의 관계(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친척, 기타 중 택1)을 선택합니다.
- 주 소 : 우편번호찾기 버튼을 눌러 기본주소를 입력한 후 세부주소를 입력합니다.
- 통지구분 : 청구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을 방법(이메일, 휴대폰 문자, 우편 중 택1)을 선택합니다.
※ 일반적으로 휴대폰 문자로 선택할 경우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연락처(집) : 유선전화번호를 입력하며, 없을 경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 메 일 :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며, 통지구분에서 이메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공제급여 지급 받을 계좌]

· 공제급여 지급 받을 계좌(통장사본 첨부, 청구자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김재홍		

- 은 행 명 :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은행명을 입력합니다.
- 계좌번호 :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 아래 예금주 명의의 계좌와 동일해야 합니다.

- 예금주명 : 모바일 인증한 휴대폰 명의자의 이름이 자동 입력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사항]

- 사고구분에서 사고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중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보전비용 ☐ 위로금 ※ 일반적인 의료기관 치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선택하여 주세요

- 청구금액 :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력합니다.
- 청구구분 : 공제급여의 종류와 청구구분을 선택합니다.

- 사고구분에서 학교폭력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

· 청구사항	
청구금액	원(원단위 절사하여 입력하세요)
청구구분	☐ 중간 ☐ 최종 ※중간: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최종: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청구금액 :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력합니다.
- 청구구분 : 학교폭력 피해비용의 종류와 청구구분을 선택합니다.

[사고일시 및 병명 등]

사고일시	2016-06-04 트 요일
사고병명	
진단내용	

- 사고일시 : 사고일시의 빈칸을 눌러 달력의 날짜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2009	11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고 병명 및 진단내용은 진단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진단내용이 없다면 생략 가능 합니다.

[파일업로드]

· 파일업로드 **추가** **선택삭제** 10MB 미만의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 파일로 첨부된 영수증 사본은 참고용으로 접수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공제회로 영수증 원본을 우편 송부하셔야 접수처리 됩니다.

- 공제급여청구와 관련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취소]

공제급여 청구 시 구비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의료비영수증 원본(병원영수증, 처방전을 첨부한 약제비영수증), 청구권자 은행통장 사본, 50만원초과시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입니다.

- 확인 버튼을 눌러 청구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취소 버튼은 입력된 내용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작성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저장과 동시에 공제회로 통보되며, 공제급여청구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수정**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서류미도착, 보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수정 가능(그 외 수정이 필요할 경우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서류미도착, 보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삭제 가능(그 외 삭제가 필요할 경우 공제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처리내역** : 작성된 청구서를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통지 현황					
사고일을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자	사고번호	2015-0000315	학교명	공제조합학교	
	성명	성년필름	성별	학년월	사고자구분
	김다원	999999	남	1학년/1 반	일반학생
사고일 ▼	2015-08-05	작성일	2015-08-31	초등사호	2018-08-05

공제급여 청구 현황							
순번과 금액액을 클릭하시면 상세 처리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번	청구일	청구구분	청구액	결정액	결정일	지급일	잔액지급액
1	2015-08-31	요양급여	1,000	0			0
신청구분		신청일	내역				
서류미도착		2015-08-31					
서류도착		2015-09-04					
보완요청		2015-10-26					
보완요청		2015-10-26					
지급심사		2015-10-30					

-  **사유** : 보완 또는 대상아님 상태일 때 해당 사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법 령

- 학교안전과 관련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원하는 파일 형식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또는 열어볼 수 있습니다.



4 안 내

- 학교안전공제회 관리자가 공지한 글, 업무처리 방법, 사·도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공지사항

- 학교안전공제회 관리자가 공지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공지사항 | 업무흐름도 | 연락처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공지사항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4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 이전 안내	관리자	2015-01-06	8817
33	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관리자	2014-07-03	894
32	민생가 되지 않는 경우(사고통지서, 공제급여 청구서)	관리자	2014-05-09	13561
31	DB서버 교체로 인한 시스템 접속 일시 중단 알림	관리자	2014-02-03	496
30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실 이전 안내	관리자	2013-11-19	3022

1 2 3 4 5 6 7 >

2. 업무흐름도

- 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제출서류 템을 이용하여 업무흐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 | 공제급여청구 | 학교특례사고통지 | 학교특례제청 | 알림 | 안내 | 학교정보수집 | 통계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업무흐름도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업무명 | 화면명 | 업무서지

학생	사고발생		
	접속	www.schoolsafety.or.kr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로그인 - 학교명 ID - 비밀번호 입력
학교	사고통지	사고통지	○ 기타사항을 제외한 내용 입력
	내부결재		○ 사고통지 웹/메일로 작성하고 입력 후 인쇄하여 학교장에게 (사고통지 제출서류를 수령가능)
	통보	사고통지	○ 통보받은 통보자에게 전달
	공제제청	제청통지	○ 피보험 - 공제제청서 작성 ○ 피상수 - 공제제청서 작성 (1) 통 - 사고통지 받은 학교장에게 송부

3. 연락처

- 전국 시·도 공제회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hool Safety is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안전하고 투명한 **학교안전** 교육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연락처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홈 > 안내 > 연락처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홈페이지
중앙회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7길 33	02-793-5015	02-793-5016	홈
서울	(07260)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3층	02-1670-4972	02-720-0191	홈
부산	(471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63번길 44	051-867-3990	051-862-6155	홈
대구	(4265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청명관 1층	053-231-0924	053-753-8374	홈
인천	(22146)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 8번길 23, 3층(주안동, 유성빌딩)	032-437-7900	032-431-3808	홈
광주	(61987) 광주시 서구 화정로 189번길 30(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110호)	062-380-4158	062-380-4163	홈
대전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042-616-8742~3	042-616-8739	홈
울산	(44540)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광역시교육청내	052-210-5891~6	052-210-5899	홈
세종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044-320-3318~9	044-320-3469	홈
경기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통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5층	1588-5255	031-840-2127	홈
강원	(24223)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033-258-5477~8	033-258-5469	홈
충북	(2854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교육박물관 4층	043-252-7109	043-253-0177	홈
충남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041-640-8450~3	041-631-9832	홈
전북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6층	063-272-0807	063-220-9441	홈
전남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머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내	061-260-0729~32	061-260-0117~8	홈
경북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1899-7752	054-854-0192	홈
경남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055-210-5283~4	055-2105285	홈
제주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064-710-0072~3	064-710-0079	홈

제5장

보상심사 및 재심사 청구

1. 보상심사 및 재심사 청구란?

구 분	보상심사청구	재심사청구
1. 의의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2. 대상 사건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있었던 사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있었던 사건
3. 청구 기간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4. 피 청구기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5. 청구서	○심사청구서[별지1]	○재심사청구서[별지2]

2. 보상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 안내



【별지1】심사청구서

학 교 안 전 공 제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피공제자와의 관계		
	④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피공제자와의 관계		
	⑧ 주 소	(전화번호)					
피공제자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소속학교명 (학년 반)	학교(원)		학년	반		
	⑬소속학교 소재지						
⑭공제급여의 결정내용							
⑮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에 한 합니다) 1통							

[별지 제1호서식 뒷면]

1. ①~④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⑤~⑧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1항” 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 청구인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변호사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3. ⑨~⑬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속학교명,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4. ⑭ 공제급여 결정내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5. ⑮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는 다음 『예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첨부합니다.

☞ 청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20 . . 자하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비용의 보전 중 택일) ○○○원 지급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
여 다음과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 . .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상해
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급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공제회는 ○○○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습
니다. 이에 청구인이 공제회가 결정한○○급여 ○○○원 지급결정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
하다고 생각되므로 요양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유와 사실관계,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
시)

20 . . 청구인 ○○○

【별지2】재심사청구서

학 교 안 전 공 제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피공제자와의 관계	
	④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피공제자와의 관계	
	⑧ 주 소	(전화번호)				
피공제자	⑨ 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소속학교명 (학년 반)	학교(원) 학년 반				
	⑬소속학교 소재지					
⑭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⑮결정일자	20 . . .	
⑯심사위원회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⑰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20 . . .	
⑱공제급여의 결정내용						
⑲심사위원회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⑳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인 경우에 한함이다) 1통						

[별지 제1호서식 뒷면]

1. ①~④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⑤~⑧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1항”관련내용을 기재합니다.
 - 청구인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변호사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3. ⑨~⑬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소속학교명,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4. ⑭ 최초에 공제급여를 받고자 청구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⑮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⑭항”의 공제회에서 공제급여 지급 등이 결정된 날을 기재합니다.
6. ⑯ 심사위원회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불복에 대하여 심사·결정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말합니다.
7. ⑰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이라 함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합니다.
8. ⑱ 공제급여 결정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서 심사결정서상의 주문을 기재합니다.
9. ⑲ “심사위원회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은 심사결정서상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또는 공제회를 경유하여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이라고 기재하고, 이러한 고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지 않았음”으로 기재합니다.
10. ⑳ “재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는 다음 『예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첨부합니다.

☞ 청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인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20 . . 자호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비용의 보전 중 택임) ○○○원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급여 ○○○원 지급결정(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 . .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급여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공제회는 ○○○원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공제회가 결정한 ○○급여 결정액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급여 ○○○원 지급결정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요양급여 ○○○원을 지급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유와 사실관계,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

20 . . 청구인 ○○○

목 차

1. 사고발생신고 및 공제급여 청구는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104
2.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려고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접속이 제한됩니다’ 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4
3. 사고발생신고서 및 공제급여청구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104
4. 사고발생신고 시기와 지연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04
5. 사고발생신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05
6.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사고통지서를 공제회로 다시 보내야 하나요?	105
7. 공제급여청구시기 및 방법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105
8. 사고발생신고한 건은 반드시 공제급여 청구를 해야 하나요?	105
9. 준비한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106
10. 3년 이상 장기간 치료(보철, 성형 등)를 요할 경우는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106
11. 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중 ‘위임인, 대리인’ 란도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106
12.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나요?	106
13. 공제급여 청구후 우편제출하였는데 ‘서류미도착’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106
14. 피공제자가 졸업, 전학, 사망을 하여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106
15.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는 지급하나요?	107
16. 교통비 등 기타 소요경비도 지급하나요?	107
17.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이란?	107
18.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의 보상여부?	107
19. 등하교시 학교밖에서 발생한 사고	107
20. 학교 내 기숙사 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	108
21. 질병치료비는 지급이 되나요?	108
22.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보상이 되나요?	108
23. 착용하던 안경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108
24. 학생이 찬 공에 행인이 부상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109
25. 교직원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	109
26. 학교폭력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도 보상되나요?	109

27.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도 보상하나요?	109
28. 교육활동 중 자해·자살 사고	110
29. 시설수련원 등에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110
30.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장 결재없이 교사가 학생들과 단체로 야외활동 중 발생한 사고 ..	110
31. 수학여행·체험학습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시	111
32. 민영상해보험 가입 시 공제회와 이중 보상여부	111
33. 문화체험을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111
34. 수업종료 후 교내에서 놀다가 넘어져 부상이 경미하여 알리지 않고 귀가하였다가 부상이 심해져 며칠 경과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111
35. 학생이 조기등교하여 교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112
36. 오전수업종료후 귀가했다가 다시 방과후 수업위해 등·하교 시 보상여부	112
37. 종례후 또는 공휴일에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	112
38. 인근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보상범위	112
39. 학생이 교육활동 중 갑작스런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112
40.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로 책정방법	113
41. 공제급여 청구 소멸시효	113
42.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지?	113
43. 동일한 검사를 여러 병원에서 실시한 경우와 보상	113
44. 갑작스런 실신에 따른 치료비 지급여부	113
45. 응급차(구급차)를 이용한 비용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114
46. 기왕증 측정방법	114
47. 과실상계의 적용	114
48.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위로금의 지급	115
49.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사고발생통지를 하였는데 학부모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115
50. 합의금의 지급범위	115
51. 사고통지 해태 또는 허위 사고통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보상의 관계	115
52. 교육활동참여자의 보상범위	116
53. 자녀체육대회에 참관 중 발생한 학부모의 사고	116
54. 학교급식 종사자를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6
55. 외부인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행사에 참석한 경우	116
56. 컴퓨터 학원강사가 방과후 수업 중 부상한 경우	117
57.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117

Q1**사고발생신고 및 공제급여청구는 어디에서 작성하나요?**

- A.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며 다음 세가지 방법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접속 가능합니다.
1. 싸이트 주소(www.schoolsafe.or.kr) 직접 입력
 2.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kn.ssif.or.kr) 메인화면 공제급여관리시스템 배너 클릭
 3.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검색

Q2**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려고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접속이 제한됩니다’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학교사용자 로그인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로그인 하지 않는 경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접속이 제한됩니다’ 문구가 안내되며 접속이 제한됩니다. 간혹 학교에서 로그인 하여도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Q3**사고발생신고서 및 공제급여청구서 작성은 누가 하나요?**

- A. 사고발생신고서 작성은 학교에서 진행하여야 하고 신고서 접수 후 공제급여 청구는 학교 또는 학부모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사고발생 신고서 작성(학교에서 작성) →공제급여청구서 작성(학교 또는 학부모)→구비서류 제출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수 후 구비서류를 반드시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Q4**사고발생신고 시기와 지연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법 제44조 제2항에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청구여부나 완치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사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가능하면 1주일 이내 사고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연할 경우, 사고발생신고서 하단 ‘기타사항’에 지연사유를 기재하시면 감안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Q5**사고발생신고의 범위**

- A. 법 제2조 제4호에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Q6**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한 사고통지서를 공제회로 다시 보내야 하나요?**

- A. 학교장 내부결재 없이 통보하는 사례들로 인해 학교안전사고 사실관계 확인에 혼선이 많아 2019년 3월 11일부터 학교장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사고발생신고서 첨부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발생신고서 인쇄 → 학교장 대면결재 → 스캔 또는 사진촬영 → "수정" 클릭하여 파일첨부 → 하단의 "확인" 클릭

Q7**공제급여(보상금) 청구시기 및 방법과 제출서류**

- A. 위와 같이 사고발생통보한 건에 한하여 치료가 끝나면 학교안전법 제65조(시효)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 또는 학부모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제급여 청구서를 입력합니다.
- 제출서류는 공제급여 청구서 원본, 진료비영수증 원본, 청구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50만원 초과 청구시), 의사진단서(50만원 초과 청구시)입니다.

Q8**사고발생신고한 건은 반드시 공제급여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사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고발생 신고는 반드시 하되 부상이 경미하거나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고 피공제자의 청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Q9**준비한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 A.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남교육청 제2청사 4층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우편번호 51430)으로 우편(등기) 발송하여야 합니다.

Q10**3년 이상 장기간 치료(보철, 성형 등)를 요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청구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기 전에 중간 청구를 하면 그 시점부터 또다시 청구시효가 3년 연장되므로 치료가 지속적으로 남아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년 이내마다 중간 청구하여야 합니다.

Q11**공제급여청구서 작성 중 '위임인, 대리인'란도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 A. 공제급여 수령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법적대리인(보호자, 학교)이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제3자가 받을 경우에만 위임인, 대리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Q12**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나요?**

- A. 학교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급여된 본인 부담금은 전액 지급합니다만 비급여진료비는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제한적으로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Q13**공제급여 청구 후 우편제출하였는데 '서류미도착'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 A.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담당자가 부재중으로 '서류도착'으로 전산변경을 해 놓지 않은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보낸지 일주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서류도착' 또는 '심사중'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우편배송도중 분실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남학교안전공제회(1811-90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14**피공제자가 졸업, 전학, 사망을 하여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학교안전법 제65조에 의거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당시 사고발생신고가 되어 있고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공제회 보상이 가능합니다.

Q15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비는 지급하나요?

- A. 학교안전사고로 열상이나 열창으로 치료 후에도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에 따라 실제 시행한 반흔제거술 1회 비용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반흔제거술 대신 레이저시술 등으로 흉터제거를 할 경우에는 2회까지 인정합니다.

Q16 교통비 등 기타경비도 지급하나요?

- A. 아니요. 학교안전법 제36조(요양급여)에 명시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와 처방에 따른 조제료만 지급합니다.

Q17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의 범위

- A.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시 보상대상이며 통상적인 체류시간을 판단함에는 정규 교육활동의 종료시간, 체류시간 중의 활동 상황, 교사의 체류지시 여부, 교직원의 임장여부, 교직원의 근무 시간, 계절, 요일, 피공제자의 신체적 특성, 가정적 특성, 그 외의 사고 발생을 전후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18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의 보상여부

- A.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하여 학교의 시설물 등이 손괴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보상하게 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교육활동 중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하여 직접 피공제자가 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게 됩니다.

Q19 등·하교시 학교밖에서 발생한 사고

- A.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 발생한 우발적인 안전사고는 보상대상입니다.
- 다만, 지도교사의 임장지도를 벗어난 교육활동 외 사고이므로 사고학생이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집↔학교 간 통상적 경로)
- 증빙서류 :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약도(도면), 현장사진 등

Q20

학교 내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사고

- A.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거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과 제6호에 의거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에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21

질병치료비 지급 대상

- A.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Q22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 A. 모든 식중독사고는 우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릅니다.
- ① 직영급식이 원인인 경우 :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중에 조리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과실로 판명되고 진료확인서상 “식중독”으로 진단 받으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합니다.(단순 장염, 위장염 등은 불인정)
 - ② 위탁급식업체나 납품 식자재가 원인인 경우 : 업체가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지 명백하지 않거나 사고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보상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Q23

착용하던 안경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 A. 안경구입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의학적 소견으로 사고이전 착용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Q24**학생이 찬 공이 학교 밖으로 나가 행인을 부상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A.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활동으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 신체적 피해 또는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피공제자 이외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 질병, 재산상의 손해 등은 본회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에서 실시하는“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Q25**교직원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

- A. 교직원은「공무원연금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공무원 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에 열거한 개별법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일교사나 명예교사 등은 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6**학교폭력사고로 발생한 치료비 보상**

- A. 학교폭력사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가해자의 불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 간에 분쟁 조정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에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알린 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Q27**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보상**

- A.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는「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거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뺑소니 나 무보험 차량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국가는 피해자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하여 사고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28**교육활동 중 자해·자살사고**

- A.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기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이고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또는 신체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Q29**사설수련원 등에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 A. 사설수련원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현지에서 수련원 직원이 지도하는 조건으로 학교장과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탁교육시 학교장이 아닌 사설수련원장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사설수련원장은 학생들의 지도·감독 책임과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위탁교육을 의뢰할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하여 수련원 측에서 직접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만 수련원에서 제공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진행은 학교측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설물 하자, 급식 등 수련원 운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수련원 측이, 그 외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수련원 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공제회에서 중복보상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보상이 공제급여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Q30**교사가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장 결재없이 학생들과 단체로 야외활동 중의 사고**

- A.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교육활동 이라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야외활동을 실시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Q31**수학여행·체험학습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시**

- A.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학여행, 소풍, 체험학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서 단체여행 시, 여행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교외교육활동 시 학교장은 사전 숙박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차량종합병원 가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32**민영 상해보험 가입 시 공제회와 이중 보상여부**

- A. 동일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하여 피해학생부모가 실손의료비 등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회와 중복보험에 해당【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1424(2013. 3.15)】되어 차액보상 했으나【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4784(2019. 5.15.) “실손보험 가입자의 공제급여 청구관련 안내” 공문참조】에 따라 2019. 5. 7.이후 사고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Q33**문화체험을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A.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시 시행령 제2조 제4호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이며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 결정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Q34**수업종료 후 교내에서 놀다가 넘어져 부상이 경미하여 알리지 않고 귀가하였다가 부상이 심해져 며칠 경과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A. 법 제44조 제2항에서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직후 지도교사의 인지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사고 사실을 사전 담임교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만으로는 학교안전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사고학생이 보건실에 들러 응급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또는 목격자 진술 및 초진차트 등 증빙서류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임을 입증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Q35**학생이 조기 등교하여 교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 A. 학교장이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문과 교실을 개방하고 등교하는 학생을 수용하였다면 조기 등교한 학생의 교내 활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교육 활동으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목격자 진술 및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Q36**초등학생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 방과후 활동 및 특기적성교육을 받기 위해 오후에 등.하교하다 발생한 사고시 보상여부?**

- A. 지도교사가 수업종료(종례)를 선언하면서 오후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대상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면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하교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Q37**종례 후 또는 공휴일에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

- A.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종료(종례해산)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공휴일에 친구들과 교내에서 놀이 중에 발생한 사고 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 및 제6호 의거 학교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38**인근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보상범위**

- A.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A초등학교에 인근 B학교의 학교장이 소속 학생을 위탁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 동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Q39**학생이 교육활동 중 갑작스런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 A.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012. 4. 1부터 시행하는 법 제40조 제2호에 의거 위로금(4천만원 한도)을 지급합니다.

※ 반드시 의학적 결과에 의하여 원인불명이 입증되어야 함

Q40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로 책정방법

- A.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 사고의 발생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로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시·도공제회는 고시된 공제로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공제료를 산정, 시·도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Q41 공제급여 청구 소멸시효

- A. 법률 제65조에 의거“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등 피공제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공제급여를 청구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2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지?

- A. 보상가능 합니다. 다만, 외국 요양기관에서 행한 요양에 대한 요양비 산정기준은 -국내의 기준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기준에 의하고, 국내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의하므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3 동일한 검사를 여러 병원에서 실시한 경우와 보상

- A. 1차 진료기관의 진단결과 의뢰서에 의해 2차 진료기관으로, 2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담당의사가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이나, 별다른 부상 또는 치료없이 학부모의 진료 불신 등으로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4 갑작스런 실신에 따른 치료비

- A. 교육활동 중 아무런 사고없이 갑자기 실신을 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하나, 실신의 원인을 찾기 위한 각종 검사비는 본인 질병 치료비 이므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Q45**응급차(구급차)를 이용한 비용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요양급여의 범위에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사고의 발생시간, 장소, 응급치료 병원과의 거리, 사고의 경중, 사고로 인한 보행이나 이동의 가능여부,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호송가능 여부, 치료 중인 병원에서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 여러 이송수단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휴일·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발생한 호송비의 지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 단순히 의료기관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시 불인정)

Q46**기왕증 측정방법**

A. 영 제19조의 2 제1항에서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기왕증(질병,부상,장해) 등이 학교안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었는가의 여부는 진료의사의 소견서(기여도 측정)에 의할 것이며 공제회는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회가 지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등에 기초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Q47**과실상계의 적용**

A. 영 제19조의2 제2항에서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에서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48**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위로금의 지급**

- A.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장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장해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위자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1급 또는 2급 장해시)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치료중 발생한 간병비는 불인정)

Q49**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사고발생통지를 하였으면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하나요?**

- A. 사고당시에는 병원치료를 받아 중대한 사고로 알고 통지를 하였으나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 학부모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통지한 자료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만약 사고발생통지서를 만약 삭제하시고 싶으시면 본회로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고통보를 하였다고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50**합의금의 지급범위**

- A. 공제급여의 지급과 과태료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통지하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공제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고 통지를 한 후에 공제급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Q51**사고통지 해태 또는 허위 사고통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보상의 관계**

- A. 또한 법 제35조제2항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여 교사 혹은 학교 측과 피해 학부모간에 법원의 화해 권고로 결정된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다른 이의가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한 보상액 또는 배상액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의 합의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금은 본회에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52**교육활동참여자의 보상범위**

A. 법 제2조제5호에서 "교육활동참여자가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인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등. 하교시간 중의 사고까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활동을 위한 등교하던 중 또는 교육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피공제자로서의 사고가 아닙니다.

1. 교사를 보조하여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일일교사, 명예교사 등
2. 학교장 승인, 요청에 의해 등.하교 시, 교통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3. 비영리민간단체회원으로서 서면으로 학교장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Q53**자녀체육대회에 참관 중 발생한 학부모의 사고**

A. 학교체육대회 등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참여한 것이 아닌 관람자로 있던 학부모 등이 임의로 경기에 참여한 경우는 교육활동 참여자로 보기 어려우며 교육활동참여자의 판단기준은 교육활동 참여가 공식 문서에 의해 결재되고 시행되었는가의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Q54**학교급식 종사자를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하여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학교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시간제 급식 배식원으로 고용계약을 한 종사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55**외부인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행사에 참석한 경우**

A. 외부인이 학교장의 서면요청으로 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한 교육활동을 보조하다가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민원업무, 상담, 학교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Q56**컴퓨터 학원강사가 방과후 수업 중 부상한 경우**

- A. 학생이 방과후 수업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학원 강사의 경우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정당한 댓가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입한 산재보험 또는 개별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Q57**학교안전공제회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 A.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공제가입자는 경남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kn.ssif.or.kr) 좌측 중간 “가입확인서” 배너 클릭하여 학교명을 검색하시면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편람

인쇄·발행일 2019년 12월

발 행 처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T: (055)210-5281~4

